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3
----------	-----

2011. 7.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2. 6. 8.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2. 6. 27.
4. 상정일자 : 제238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6. 28.)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6. 29.)
    - 안건상정, 질의 및 답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7. 2.)
    - 안건상정, 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재무국장 : 강종필)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 (1) 결산총괄

- 예산현액은 총 21조 8,832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21조 5,533억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7%인 20조 4,993억원으로
  - 그 차인잔액은 1조 540억원임
- 이 중 다음회계연도 이월사업비 4,139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8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73억원임

### (2)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4조 9,807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14조 6,932억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8%인 14조 5,030억원으로
  - 그 차인잔액은 1,902억원임
- 이 중 2012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212억원, 사고이월액 536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6억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28억원임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4조 6,932억원으로 예산현액 14조 9,807억원의 1.9%인 2,875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음
  - 시세가 11조 6,990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1조 2,006억원의 4.4%인 4,98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세외수입에서는 8,132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5,511억원의 47.6%인 7,379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2,04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035억원의 0.6%인 13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4,344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4,696억원의 2.4%인 352억원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음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조 9,807억원의 96.8%인 14조 5,030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74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4,029억원임
-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각 분야별 지출내역은
    - 일반공공행정비는 4조 1,387억원의 99.2%인 4조 1,062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228억원의 95.1%인 1,168억원
    - 교육비는 2조 5,604억원의 99.7%인 2조 5,539억원
    - 문화 및 관광비는 4,373억원의 91.5%인 4,001억원
    - 환경보호비는 4,288억원의 89.4%인 3,833억원
    - 사회복지비는 3조 4,680억원의 96.6%인 3조 3,498억원
    - 보건비는 2,779억원의 92.6%인 2,574억원
    - 농림해양수산비는 97억원의 74.2%인 72억원
    - 산업·중소기업비는 2,055억원의 87.4%인 1,796억원
    - 수송 및 교통비는 1조 291억원의 91.9%인 9,456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조 2,076억원의 95.6%인 1조 1,549억원
    - 예비비 등 기타는 1조 949억원의 95.7%인 1조 482억원임

-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748억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212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36억원임

### (3) 특별회계

-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총12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조 9,025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6조 8,601억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9%인 5조 9,963억원으로
  - 그 차인잔액은 8,638억원임
- 차인잔액 중 2012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1,322억원,  
사고이월액 2,069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5억원임
-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6조 8,601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 9,025억원의 0.6%인 424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음
- 이를 특별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면
  - 예산현액보다 많이 징수된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 1,926억원이며,  
그 내역은
 

· 주택사업특별회계	1,277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41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8억원임

- 예산현액 보다 적게 징수된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2,350억원이며,  
그 내역은

· 도시개발특별회계	1,120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476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241억원
· 재정비축진특별회계	62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392억원임

○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조 9,025억원의  
86.9%인 총 5조 9,963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3,39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5,671억원임.

○ 지출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특별회계별로 보면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208억원의 93.9%인 9,589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1,979억원의 88.0%인 1조 536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132억원의 82.9%인 1,767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574억원의 90.0%인 7,714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1,778억원의 71.3%인 8,393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506억원의 90.5%인 4,078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570억원의 79.8%인 2,051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598억원의 99.8%인 6,583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0억원의 85.3%인 128억원
- 재정비축진특별회계는 1,514억원의 87.4%인 1,323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억원의 0.6%인 3백만원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011억원의 86.6%인 7,801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음

#### (4) 예비비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14억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376억원임
- 이 중 지출액은 82.0%인 1,128억원이고, 이월액은 5.3%인 73억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12.7%인 175억원임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개 특별회계 총 2,324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27억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4억원,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3억원임

#### (5) 기금결산

-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결산은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673억원이며
- 2011년도 중에 2조 9,837억원이 수입되고, 2조 9,251억원이 지출되어,
- 2011년도말 현재액은 6,259억원으로 전년대비 10.3%인 586억원이 증가하였음

(6) 채권 현재액

-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조 5,425억원으로서,
- 2011년도 중에 9,660억원이 발생하고, 1조 8,144억원이 소멸하여,
- 2011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1,835억원, 10개 특별회계 3,318억원, 6개 기금 2조 1,787억원 등 총 2조 6,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인 8,484억원이 감소하였음

(7) 채 무

- 201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조 1,761억원임
- 이는 2010년말 3조 8,177억원 대비 16.8%인 6,416억원이 감소한 것임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0.9%인 9.703억원이 증가한 104조 8,274억원으로, 행정재산 90조 475억원, 일반재산 14조 7,799억원임
- 2011년도 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2010년 대비 5조 6,451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이관 등으로 4조 6,748억원이 감소되었음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08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인 135억원이 증가하였음

- 2011년도 중 물품구매·관리전환 등으로 375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처분·관리전환 등으로 240억원이 감소되었음

(10)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 2011년도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자산총액은 120조  
3,127억원이고, 부채총액은 4조 5,093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5조 8,034억원임
- 2011년도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총 수익은 18조  
4,346억원이고, 총 비용은 16조 4,042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304억원임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남중)

#### 1. 2011 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 2011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0조 5,850억원 에서
간주처리분	2,065억 4,900만원
추경예산액	2,083억 6,300만원 을 더하여
총예산액	20조 9,999억 1,300만원 으로서

전년대비 2.7% 감소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4조 5,433억 6천 5백만원 에서
간주처리분	770억 6,000만원
추경예산액	109억 3,6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14조 6,313억 6,200만원 임

- 특별회계는 12개로서

당초예산액	6조 416억 3,500만원 에서
간주처리분	1,294억 8,900만원
추경예산액	1,974억 2,8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6조 3,685억 5,100만원 임

〈표 1-1〉 2011회계연도 최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간주처리 (1차~9차)	추경예산	최종예산액
합 계	20,585,000	206,549	208,364	20,999,913
일 반 회 계	14,543,365	77,060	10,936	14,631,362
일 반 공 공 행 정	4,093,955	4,256	△50,272	4,047,939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09,981	74	0	110,054
교 육	2,633,089	0	△2,267	2,630,823
문 화 및 관 광	357,237	18,147	△4,308	371,076
환 경 보 호	336,364	4,498	△6,269	334,593
사 회 복 지	3,400,867	34,514	39,445	3,474,826
보 건	277,525	4,506	△5,583	276,448
농 립 해 양 수 산	9,628	60	5	9,693
산 업 · 중 소 기 업	186,340	3,944	△1,875	188,410
수 송 및 교 통	929,580	1,159	43,885	974,624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055,955	5,563	44,668	1,106,187
예 비 비	203,402	0	△51,967	151,435
기 타	949,441	340	5,474	955,255
특 별 회 계	6,041,635	129,489	197,428	6,368,55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839,024	0	4,476	843,500
지 역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	500	0	0	500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38,524	0	4,476	843,000
기 타 특 별 회 계	5,202,611	129,489	192,951	5,525,051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804,944	0	164,875	969,819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161,498	2,175	△82,592	1,081,081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64,800	0	0	164,8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651,101	127,254	16,399	794,754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846,537	0	147,565	994,102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493,300	0	△53,365	439,935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특 별 회 계	257,000	0	0	257,000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659,800	0	0	659,80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14,700	60	0	14,760
재 정 비 촉 진 특 별 회 계	148,930	0	70	149,000

## 2. 2011 회계연도 결산 개관

### (1) 결산총괄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20조 9,999억 1,3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8,832억 3,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조 8,831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21조 5,532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8.5%로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음.
- 세출결산액은 20조 4,992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3.7%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조 539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4.8%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음.
- 사고이월액은 2,605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1% 감소하였으며
- 명시이월액은 1,533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17.6% 발생하였으며
- 보조금 집행잔액은 128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5% 증가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이월액중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은 6,272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4.8%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2.9%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음.

〈표 2-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월처리	
2011	총계	21,883,150 (2011최종) 20,999,913 (2010이월) 883,237	21,553,270 (98.5%)	20,499,280 (93.7%)	1,053,990 (4.8%)	채무상환 명시이월 153,353 사고이월 260,535 계속비 보조금잔액 12,849 순세계잉여 627,253
	일반회계	14,980,631 (2011최종) 14,631,362 (2010이월) 349,269	14,693,158 (98.1%)	14,502,962 (96.8%)	190,196 (1.3%)	채무상환 명시이월 21,154 사고이월 53,650 계속비 보조금잔액 12,633 순세계잉여 102,759
	특별회계	6,902,519 (2011최종) 6,368,551 (2010이월) 533,968	6,860,112 (99.4%)	5,996,318 (86.9%)	863,794 (12.5%)	채무상환 명시이월 132,199 사고이월 206,885 계속비 보조금잔액 216 순세계잉여 524,494
2010	총계	22,515,391 (2010최종) 21,585,900 (2009이월) 929,491	20,925,637 (92.9%)	19,978,233 (88.7%)	947,404 (4.2%)	채무상환 명시이월 4,017 사고이월 879,220 계속비 보조금잔액 9,849 순세계잉여 54,318
	일반회계	15,902,401 (2010최종) 15,614,118 (2009이월) 288,283	14,634,416 (92.0%)	14,589,232 (92.0%)	45,184 (0.3%)	채무상환 명시이월 4,017 사고이월 345,252 계속비 보조금잔액 8,825 순세계잉여 △312,910
	특별회계	6,612,990 (2010최종) 5,971,782 (2009이월) 641,208	6,291,221 (95.1%)	5,389,001 (81.5%)	902,220 (13.6%)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533,968 계속비 보조금잔액 1,024 순세계잉여 367,228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2) 세입결산

### ① 총 괄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21조 8,831억 4,9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조 5,532억 7,030만원으로
-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5%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7%)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2.9%) 대비 5.6%p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4.3%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4.4%)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94.3%)과 같은 수준임

〈표 2-2〉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다/가)	(다/나)
합 계	21,883,149	22,857,521	21,553,270	244,809	1,059,442	98.5	94.3
일반회계	14,980,631	15,884,661	14,693,158	241,994	949,510	98.1	92.5
특별회계	6,902,518	6,972,860	6,860,112	2,815	109,932	99.4	98.4

## ②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조 9,806억 3,133만원에 대하여 15조 8,846억 6,15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2.5%인 14조 6,931억 5,843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음.
- 2011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이 6.1%P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0.2%P 감소한 92.5%임

〈표 2-3〉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율(%)	
				계	결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다가)	(다나)
합 계	14,980,631	15,884,661	14,693,158	1,191,503	241,994	949,510	98.1	92.5
지 방 세	11,200,566	12,797,035	11,698,960	1,098,075	232,295	865,781	104.4	91.4
세 외 수입	1,551,068	906,590	813,162	93,428	9,699	83,729	52.4	89.7
지방교부세	203,512	204,811	204,811	-	-	-	100.6	100.0
보 조 금	1,469,585	1,434,425	1,434,425	-	-	-	97.6	10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55,900	541,800	541,800	-	-	-	97.5	100.0

〈표 2-4〉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5년 평균
예 산 액	14,631,362	15,614,118	17,045,196	14,489,715	12,879,836	14,932,045
예 산 현 액	14,980,631	15,902,401	17,465,623	14,815,040	13,145,358	15,261,811
징 수 결 정 액	15,884,661	15,779,012	17,428,072	15,946,545	14,905,392	15,988,736
수 납 액	14,693,158	14,634,416	16,359,345	14,792,751	13,798,309	14,855,596
결 손 액	241,993	266,503	252,985	299,756	334,370	279,121
수납액/예산현액	98.1	92.0	93.7	99.8	105.0	97.7
수납액/징수결정액	92.5	92.7	93.9	92.8	92.6	92.9

〈표 2-5〉 2011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금액(C) (B-A)	비율(%) (C/A)
합 계		11,200,566	11,698,960	498,394	4.4
보 통 세		9,818,139	10,249,078	430,939	4.4
	취 득 세	2,406,419	2,794,055	387,636	16.1
	주 민 세	60,707	59,471	-1,236	-2.0
	재 산 세	1,707,893	1,758,279	50,386	3.0
	자 동 차 세	1,108,886	1,008,261	-100,625	-9.1
	농 업 소 득 세	-	-	-	-
	레 저 세	132,405	161,238	28,833	21.8
	담 배 소 비 세	553,101	557,799	4,698	0.8
	지 방 소 비 세	422,486	464,867	42,381	10.0
	지 방 소 득 세	3,426,242	3,444,581	18,339	0.5
	도 축 세	-	527	527	-
목 적 세		1,209,376	1,292,000	82,624	6.8
	지역자원시설세	152,851	166,240	13,389	8.8
	지 방 교 육 세	1,056,525	1,125,760	69,235	6.6
과년도 시세		173,051	157,882	-15,169	-8.8



〈표 2-6〉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11예산현액 (A)	2011결산액 (B)	증 감	
				금 액 (C=B-A)	비 율 (C/A,%)
계		1,551,068	813,162	-737,906	-47.6
경 상 적 세외수입	소 계	583,522	443,634	-139,888	-24.0
	재 산 임 대 수 입	63,718	71,828	8,110	12.7
	사 용 료 수 입	115,380	101,299	-14,081	-12.2
	수 수 료 수 입	3,191	2,771	-420	-13.2
	사 업 수 입	353,208	193,298	-159,910	-45.3
	징 수 교 부 금	20,293	21,493	1,200	5.9
	이 자 수 입	27,732	52,945	25,213	90.9
임 시 적 세외수입	소 계	967,546	369,528	-598,018	-61.8
	재 산 매 각 수 입	130,115	59,514	-70,601	-54.3
	순 세 계 잉 여 금	0	-312,911	-312,911	-
	이 월 금	377,882	358,095	-19,787	-5.2
	전 입 금	12,000	16,347	4,347	-
	융 자 금 수 입	8,691	9,634	943	10.9
	예탁금및예수금	0	0	0	-
	부 담 금	22,053	25,988	3,935	17.8
	잡 수 입	380,921	200,643	-180,278	-47.3
	과 년 도 수 입	35,884	12,218	-23,666	잘못된 계산식

### ③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6조 9,025억 1,8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6조 8,601억 1,187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4%이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98.5%)대비 0.9%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5.1%)대비 4.3%p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4%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9%)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8.1%)대비 0.3%p 증가하였음.

〈표 2-7〉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다/가)	(다/나)
<b>합 계</b>	6,902,518	6,972,860	6,860,112	112,748	2,815	109,933	99.4	98.4
<b>기타특별회계</b>	6,000,939	6,086,404	5,997,705	88,699	2,103	86,596	99.9	98.5
도시철도건설사업	1,020,823	1,074,879	1,074,879	0	0	0	105.3	100.0
교 통 사 업	1,197,931	1,214,326	1,173,856	40,470	1,777	38,693	98.0	96.7
주 택 사 업	857,352	1,007,739	985,076	22,663	0	22,663	114.9	97.8
도 시 개 발 사 업	1,177,837	1,066,915	1,065,861	1,054	0	1,054	90.5	99.9
하 수 도 사 업	450,641	452,422	445,529	6,892	326	6,566	98.9	98.5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57,000	209,523	209,384	138	0	138	81.5	99.9
의 료 급 여 기 금	659,800	666,804	666,804	0	0	0	101.1	100.0
한강수질개선사업	15,041	14,194	14,194	0	0	0	94.4	100.0
광역교통시설사업	213,157	234,449	216,968	17,482	0	17,482	101.8	92.5
재 정 비 축 진	151,357	145,153	145,154	0	0	0	95.9	100.0
<b>공기업특별회계</b>	901,579	886,456	862,407	24,049	712	23,337	95.7	97.3
지 역 개 발 기 금	500	532	532	0	0	0	106.4	100.0
수 도 사 업	901,079	885,924	861,875	24,049	712	23,337	95.6	97.3

### (3) 세출결산

#### ① 총괄

-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1조 8,831억 5,000만원에  
 지출액이 20조 4,992억 8,000만원(예산현액대비 93.7%)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138억 8,800만원(예산현액대비 1.9%)  
 집행잔액은 9,699억 8,200만원(예산현액대비 4.4%)임.

〈표 2-8〉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합계	20,999,913	883,237	21,883,150	20,788,839	20,499,280	413,888	969,982	4.4
일반회계	14,631,362	349,269	14,980,631	14,560,159	14,502,962	74,804	402,865	2.7
특별회계	6,368,551	533,968	6,902,519	6,228,680	5,996,318	339,084	567,117	8.2

#### ②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4조 9,806억 3,100만원에  
 지출액은 14조 5,029억 6,200만원(예산현액대비 96.8%)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748억 400만원(예산현액대비 0.5%)  
 집행잔액은 4,028억 6,500만원(예산현액대비 2.7%)임.

〈표 2-9〉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14,631,362	349,269	14,980,631	14,560,159	14,502,962	74,804	402,865	2.7
일반공공행정	4,047,939	90,772	4,138,711	4,106,576	4,106,119	456	32,136	0.8
공공질서 및안전	110,054	12,715	122,769	118,771	116,770	2,394	3,605	2.9
교육	2,630,823	△70,433	2,560,390	2,553,936	2,553,936		6,454	0.3
문화및관광	371,076	66,218	437,294	410,247	400,151	16,171	20,972	4.8
환경보호	334,592	94,228	428,820	394,883	383,308	11,723	33,789	7.9
사회복지	3,474,826	△6,853	3,467,973	3,357,362	3,349,780	13,493	104,700	3.0
보건	276,448	1,416	277,864	259,187	257,424	1,763	18,677	6.7
농림해양수산	9,693		9,693	7,171	7,171		2,522	26.0
산업 ·중소기업	188,410	17,085	205,495	180,552	179,568	985	24,942	12.1
수송및교통	974,624	54,523	1,029,147	952,162	945,638	6,623	76,886	7.5
국토 및지역개발	1,106,187	101,446	1,207,633	1,171,154	1,154,939	21,196	31,498	2.6
예비비	151,435	△137,654	13,781				13,781	100.0
기타	955,255	125,806	1,081,061	1,048,158	1,048,158		32,903	3.0

### ③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조 9,025억 1천9백만원에

지출액은 5조 9,963억 1천8백만원(예산현액대비 86.9%)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390억 8천 4백만원(예산현액대비 4.9%)

집행잔액은 5,671억 1천 7백만원(예산현액대비 8.2%)임.

〈표 2-10〉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특별회계	6,368,551	533,968	6,902,519	6,228,680	5,996,318	339,084	567,117	8.2
기타특별회계	5,525,051	475,889	6,000,940	5,407,592	5,216,174	292,156	492,610	8.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969,819	51,005	1,020,824	970,483	958,876	32,804	29,144	2.9
교통사업	1,081,081	116,850	1,197,931	1,077,729	1,053,579	25,321	119,031	9.9
광역교통시설	164,800	48,357	213,157	202,971	176,664	34,958	1,535	0.7
주택사업	794,754	62,598	857,352	810,322	771,408	38,654	47,290	5.5
도시개발	994,102	183,735	1,177,837	918,191	839,367	114,499	223,971	19.0
하수도사업	439,935	10,706	450,641	416,594	407,753	23,966	18,922	4.2
집단에너지공급	257,000		257,000	207,599	205,132	21,646	30,222	11.8
의료급여기금	659,800		659,800	658,304	658,304		1,496	0.2
한강수질개선	14,760	281	15,041	13,165	12,857	308	1,876	12.5
재정비축진	149,000	2,357	151,357	132,234	132,234		19,123	12.6
공기업특별회계	843,500	58,079	901,579	821,088	780,144	46,928	74,507	8.3
지역개발기금	500		500	3	3		497	99.4
상수도사업	843,000	58,079	901,079	821,085	780,141	46,928	74,010	8.2

#### (4) 불용액

-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9,699억 8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4%로 최근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5.7%에 비해 1.3% 감소하였으며, 전년도(7.3%)대비 2.9% 감소하였음.

〈표 2-11〉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b>합 계</b>	969,982	161,313	29,036	533,262	12,843	233,528
일 반 회 계	402,865	79,544	11,163	285,750	12,627	13,781
특 별 회 계	567,117	81,769	17,873	247,512	216	219,747
<b>기타특별회계</b>	492,610	78,729	387	201,952	216	211,32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9,144	10		26,713		2,421
교통사업	119,031	13,708		101,447	216	3,660
광역교통시설	1,535			1,484		51
주택사업	47,290	12,913	360	21,143		12,874
도시개발	223,971	25,991		14,041		183,939
하수도사업	18,922	1,131	1	16,549		1,241
집단에너지공급	30,222	20,422		3,896		5,904
의료급여기금	1,496			1,496		
한강수질개선	1,876	849	18	896		113
재정비축진	19,123	3,705	8	14,287		1,123
<b>공기업특별회계</b>	74,507	3,040	17,486	45,560		8,421
지역개발기금	497			52		445
상 수 도 사 업	74,010	3,040	17,486	45,508		7,976

-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4,028억 6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2.7%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4.3%에 비해 1.6% 감소하였으며, 전년도(6.1%)대비 3.4%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5,671억 1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8.2%로 최근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8.8%에 비해 0.6% 감소하였으며, 전년도(10.4)대비 2.2% 감소하였음.

(5)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총 17건에 1,136억 1,2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성과주의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비목간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건비 부족분 충당 위한 경비를 이용을 한 것임.

〈표 2-12〉 예산 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증	감	비 고
합 계	17	113,612	△113,612	
일반회계	17	113,612	△113,61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 인건비 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 예산의 전용은 총 171건에 398억 6,600만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112건, 255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2-13〉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2011	2010	2009	2008	2007
합 계 (건수)		39,867 (171)	65,392 (283)	97,640 (291)	61,724 (397)	52,704 (282)
	일반회계 (건수)	38,743 (137)	62,197 (250)	78,484 (239)	43,379 (344)	41,469 (241)
	특별회계 (건수)	1,124 (34)	3,195 (33)	19,156 (52)	5,855 (53)	8,230 (41)

(6) 예비비

① 총 괄

- 예비비 예산                    3,838억 4천 3백만원 에 대하여
- 지출결정액                    1,503억 1천5백만원 중
- 지출액은                        1,252억 4천 7백만원 이고
- 이월액은                        73억 1백만원 이며
- 집행잔액은                    177억 6천 7백만원 임

〈표 2-14〉 2011회계연도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383,843	150,315	132,483	125,247	7,301	17,767
일반회계	151,435	137,654	120,070	112,834	7,301	17,519
특별회계	232,408	12,661	12,413	12,413		248

② 일반회계

- 일반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1,514억 3천 5백만원으로  
 지출결정액 1,376억 5천 4백만원 중  
 지출액은 1,200억 7천만원 이고  
 이월액은 73억 1백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175억 1천 9백만원 임

〈표 2-15〉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51,435	112,878	104,936	104,936	0	7,942
일반공공행정		53,838	40,791	40,791		13,047
공공질서및안전		6,912	6,180	6,180		732
교육		4,514	1,849	1,849		2,665
문화및관광		609	518	75	443	91
환경보호		24,921	24,369	22,662	1,707	552
사회복지		2,783	2,783	2,783		
보건		95	90	45	45	5
수송및교통		25,031	24,790	22,990	1,865	176
국토및지역개발		4,951	4,700	1,459	3,241	251
기 타		14,000	14,000	14,000		

### ③ 특별회계

- 특별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2,324억 8백만원 으로
- 지출결정액                            126억 6천 1백만원 중
- 지출액은                                124억원1천3백만원 이고
- 이월액은                                0원 이며
- 집행잔액은                            24억 8백만원 임

〈표 2-16〉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232,408	12,661	12,413	12,413		248
기타특별회계	219,420	8,094	8,090	8,090		4
도시철도건설사업	2,421					
교 통 사 업	5,602	1,942	1,942	1,942		
광역교통시설사업	164	113	113	113		
주 택 사 업	12,874					
도시개발	189,672	5,733	5,729	5,729		4
하수도사업	1,547	306	306	306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904					
한강수질개선사업	113					
재 정 비 촉 진	1,123					
공기업특별회계	12,988	4,567	4,323	4,323		244
지역개발기금	445					
상 수 도 사 업	12,543	4,567	4,323	4,323		244

(7) 이월비

- 2011회계연도 이월비 중 계속비 이월은 없음
-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1,533억 5,300만원 임.
-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536억 4,900만원 이며
- 특별회계에서 2,068억 8,600만원 임

〈표 2-17〉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21,883,150	153,353	260,534	0	1.9
일 반 회 계	14,980,631	21,154	53,649	0	0.5
특 별 회 계	6,902,519	132,199	206,885	0	4.9
<b>기타특별회계</b>	<b>6,000,940</b>	<b>132,199</b>	<b>159,958</b>	<b>0</b>	<b>4.9</b>
도시철도건설사업	1,020,824	18,088	14,716	0	3.2
교 통 사 업	1,197,931	420	24,901	0	2.1
광역교통시설사업	213,157	15,795	19,163	0	16.4
주 택 사 업	857,352	14,744	23,910	0	4.5
도시개발사업	1,177,837	48,946	65,553	0	9.7
하 수 도 사 업	450,641	15,027	8,939	0	5.3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57,000	19,179	2,466	0	8.4
의료급여기금	659,800	0	0	0	0.0
한강수질개선사업	15,041	0	308	0	2.0
재 정 비 촉 진	151,357	0	0	0	0.0
<b>공기업특별회계</b>	<b>901,579</b>	<b>0</b>	<b>46,927</b>	<b>0</b>	<b>5.2</b>
지역개발기금	500	0	0	0	0.0
수 도 사 업	901,079	0	46,927	0	5.2

〈표 2-18〉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2011~200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15	413,887	634	883,236	730	929,491	987	1,184,968	641	866,773
사고이월	376	260,534	632	879,219	730	929,491	987	1,184,968	641	866,773
명시이월	39	153,353	2	4,017	0	0	0	0	0	0
계속비이월	0	0	0	0	0	0	0	0	0	0

〈표 2-19〉 사고이월비 결산 현황(2011~2007)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		
				이월액	건수	금액비율
2011	21,883,150	20,499,280	969,982	260,534	376	1.2
2010	22,515,391	19,978,233	1,653,921	879,219	632	3.9
2009	25,338,774	22,767,443	1,641,840	929,491	730	3.7
2008	21,841,177	19,432,291	1,223,918	1,184,968	987	5.4
2007	19,635,502	17,859,275	909,454	866,773	641	4.4

(8) 잉여금

① 잉여금 총괄

○ 2011회계연도 잉여금은	1조 539억 9천만원 으로
명시이월	1,533억 5천 3백만원 ,
사고이월	2,605억 3천5백만원 ,
국비잔액	128억 4천 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6,272억 5천 3백만원 임

② 일반회계 잉여금

○ 일반회계중 잉여금은	1,901억 9천 6백만원 으로
명시이월	211억 5천 4백만원 ,
사고이월	536억 5천만원 ,
국비잔액	126억 3천 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027억 5천9백만원 임

③ 특별회계 잉여금

○ 특별회계중 잉여금은	8,637억 9천4백만원 으로
명시이월	1,321억 9천 9백만원 ,
사고이월	2,068억 8천 5백만원
국비잔액	2억 1천 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5,244억 9천 4백만원 임

〈표 2-20〉 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잉여금 (A=B+C)	현년도 채무상환 (B)	잉여금내역(C)					2010년도 잉여금	잉여금 증감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비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053,990	0	153,353	260,535	0	12,849	627,253	947,404	11.3
일반회계	190,196	0	21,154	53,650	0	12,633	102,759	45,184	320.9
특별회계	863,794	0	132,199	206,885	0	216	524,494	902,220	-4.3

(9) 기 금

- 13개 기금의 2011년도말 현재액은 6,258억 6,400만원으로 2010년도말의 5,672억 7,400만원에 비해 58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2-21〉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1년도말 현재액
		수 납	지 출	순증감	
합 계	567,274	2,983,712	2,925,122	58,590	625,864
재정투융자기금	209,555	1,301,525	1,333,611	△ 32,086	177,469
중소기업육성기금	87,408	556,967	525,528	31,439	118,847
식품진흥기금	7,914	20,622	17,637	2,985	10,899
기후변화기금	36,096	15,951	10,214	5,737	41,833
도로굴착복구기금	15,656	12,786	11,934	852	16,508
여성발전기금	995	987	913	74	1,069
자원회수시설주변 지역주민기금	6,767	24,547	22,782	1,765	8,532
사회복지기금	11,745	24,038	21,141	2,897	14,642
체육진흥기금	4	3,265	1,949	1,316	1,320
감채기금	25,026	711,256	712,082	△ 826	24,200
재난관리기금	162,936	302,561	263,385	39,176	202,112
남북교류협력기금	2,158	4,047	1	4,046	6,204
대외협력기금	1,014	5,160	3,945	1,215	2,229

(10) 채권

○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조 5,424억 9,300만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용은

- 보증금채권 229억 7,651만원 ,
- 융자금채권 2조 6,002억 6,915만원 ,
- 미수금채권 751억 9,036만원 ,
- 기타 채권 10억 7,427만원 임

※ 2010년도말에 비해 8,429억 8,247만원이 감소

〈표 2-22〉 채권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1년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542,493	△842,983	966,268	△1,809,250	2,699,510
일반회계	184,239	△719	37,918	△38,636	183,520
특별회계	392,724	△60,874	30,590	△91,463	331,850
기 금	2,965,530	△781,390	897,761	△1,679,151	2,184,140

〈표 2-23〉 종류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계	공기업	기 타	
합 계	2,699,510	183,520	331,850	144,265	187,585	2,184,140
보증금채권	22,976	17,647	2,794	0	2,794	2,535
융자금채권	2,600,269	149,898	268,766	144,200	124,566	2,181,605
미수금채권	75,191	15,188	60,003	56	59,947	0
기타채권	1,074	787	287	9	278	0



(11) 부채

- 2011년도말 현재액은 4조 5,093억 3,760만원으로 2010년도말에 비해 4,701억 2,227만원 감소하였음.

〈표 2-24〉 부채 증감현황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1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환율조정등	순증감	
총 계	4,979,460	25,007,599	25,477,722	0	△470,123	4,509,337
차 입 금 (지방채포함)	3,783,146	0	630,855	0	△630,855	3,152,291
일 반 회 계	1,214,350	0	532,450	0	△532,450	681,900
기타특별회계	2,254,703	0	95,705	0	△95,705	2,158,998
도시철도건설사업	1,507,732	0	79,433	0	△79,433	1,428,299
주 택 사 업	677,980	0	6,149	0	△6,149	671,831
하 수 도 사 업	68,991	0	10,123	0	△10,123	58,868
공기업특별회계	314,093	0	2,700	0	△2,700	311,393
지역개발기금	299,093	0	0	0	0	299,093
수 도 사 업	15,000	0	2,700	0	△2,700	12,300
세입세출외현금	92,497	354,132	367,410	0	△13,278	79,219
일 반 회 계	83,987	329,476	338,561	0	△9,085	74,902
공기업특별회계	8,510	24,656	28,849	0	△4,193	4,317
기타채무 <sup>1)</sup>	1,103,817	24,653,467	24,479,457	0	174,010	1,277,827
일 반 회 계	42,329	15,116,735	15,125,490	0	△8,755	33,574
기타특별회계	945,661	9,520,518	9,320,208	0	200,310	1,145,971
공기업특별회계	115,827	16,214	33,759	0	△17,545	98,282

1) 금전 지급목적 부채로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 퇴직급여 총당부채 등

(12) 물품 및 재산

① 물품

- 2011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8,820개, 현재액 1,081억 5,500만원으로 2010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1,021개 증가하고, 금액은 134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구매와 관리전환 등에 의한 증가는 수량 1,915개, 금액 375억 1,500만원이며, 매각과 관리전환 등에 의한 감소는 수량 894개, 금액 240억 3,300만원임.

〈표 2-25〉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정수	2010년도말 보유현황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1년도말 보유현황
				증 가			감 소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합계	11,420	수량	7,799	994	921	1,915	127	767	894	8,820
		금액	94,673	11,862	25,653	37,515	2,662	21,371	24,033	108,155

## ② 공유재산

### ○ 2011년도말 공유재산은

- 토지 107,065천 $m^2$       70조 8,401억 9,322만원 ,
- 건물    7,000천 $m^2$       3조 7,138억 9,955만원 ,
- 기타 14,087천건      30조 2,732억 5,911만원 임

○ 공유재산은 총 104조 8,273억 5,188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2010년도말에 비해 9,702억 9,282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서울의료원 및 서남병원 신축등에 따른 건물재산 4,454억의 순수 증가분과 SH공사 택지개발사업 및 임대주택부지 토지 등 출자를 통한 유가증권(출자금) 3,051억원이 순수 증가한 것임

〈표 2-26〉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1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합 계	103,857,059	5,645,110	4,674,818	104,827,352	
행정 재산	계	89,742,410	4,398,404	4,093,277	90,047,537
	공공용재산	6,308,774	769,009	638,875	6,438,908
	공 용 재 산	75,361,545	3,383,128	2,419,031	76,325,642
	기업용재산	6,595,917	201,925	995,116	5,802,727
	보존용재산	1,476,174	44,341	40,255	1,480,260
일 반 재 산	14,114,649	1,246,706	581,541	14,779,814	

(13) 공기업(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결산

① 수도사업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11 회계연도 예산액은 8,430억원이고, 예산현액은 9,010억 7,871만원임.

- ┌ 수익적 수입 : 6,214억 7,778만원
- └ 자본적 수입 : 2,796억 93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8,859억 2,398만원
  - 징수액 8,618억 7,470만원
  - 미수납액 240억 4,928만원임.

〈표 2-27〉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율 (%)	
						(다/가)	(다/나)
계	843,000	901,079	885,924	861,874	24,049	95.6	97.3
수익적수입	621,478	621,478	652,175	628,223	23,952	101.1	96.3
자본적수입	221,522	279,601	233,749	233,651	97	83.5	99.9

- 세출결산
  - 지출원인액 8,210억 8,517만원
  - 지출액 7,801억 4,158만원
  - 이월액 469억 2,755만원
  - 불용액 740억 958만원

〈표 2-28〉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843,000	901,079	821,085	780,141	46,927	74,009	86.6	5.2	8.2
수익적지출	468,639	472,380	456,744	449,406	5,577	17,395	95.1	1.2	3.7
자본적지출	374,361	428,699	364,341	330,735	41,350	56,614	77.1	9.6	13.2

□ 수도권사업 지방채 현황

〈표 2-29〉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엔)

구 분	서울시 투융자기금	환경부 재특자금
차입원금	401,200	27,000
미상환잔액	310,420	12,300
상환기간	2011.12.15 ~ 2021.12.15	2001.3.15 ~ 2016.12.20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11년도말 자산은 5조 2,033억 3,716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779억 5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1년도말 부채 총액은 3,845억 603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354억 2,571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1년도말 자본은 4조 8,188억 3,113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424억 7,479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1년도 당기순손실은 10억 2,609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452억 1,624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2-30〉 연도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대비 증감률(%)
자 산	계	4,736,662	4,848,693	4,935,169	5,125,436	5,203,337	1.5
	유 동 자 산	288,840	344,235	160,080	151,718	123,988	-18.5
	비 유 동 자 산	4,447,822	4,504,458	4,775,089	4,973,718	5,079,349	2.1
부 채	계	167,603	176,515	183,275	349,080	384,506	10.1
	유 동 부 채	55,132	52,698	40,978	126,302	79,821	-36.8
	비 유 동 부 채	112,471	123,817	142,297	222,778	304,685	36.7
자 본	계	4,569,059	4,672,178	4,751,894	4,776,356	4,818,831	0.9
	자 본 금	258,098	258,098	258,098	258,098	258,098	0.0
	자 본 잉 여 금	3,416,678	3,462,655	3,494,870	3,537,493	3,580,994	1.2
	이 익 잉 여 금	894,283	951,425	998,926	980,765	979,739	-0.1
손 익	당 기 순 이 익	61,229	57,143	47,501	44,190	-1,026	-102.3
	수 익	644,005	639,986	637,056	629,592	634,664	0.8
	비 용	582,776	582,843	589,555	585,402	635,690	8.6

②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11 회계연도 예산액은 추경예산 없이 5억원이고, 예산현액은 5억원임.

- 수익적 수입 : 4억 3,000만원
- 자본적 수입 : 7,000만원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21억 4,171만원
  - 징수액 21억 4,171만원
  - 미수납액 없음

〈표 2-31〉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	
						(다/가)	(다/나)
계	500	500	532	532	0	106.4	100
수익적수입	430	430	492	492	0	114.4	100
자본적수입	70	70	40	40	0	57.1	1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279만원
  - 지 출 액 279만원
  - 이 율 액 없음
  - 불 용 액 4억 9,721만원

〈표 2-32〉 지역개발기금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		
							(다/가)	(라/가)	(마/가)
계	500	500	2.8	2.8	0	497	0.6	0	99.4
수익적지출	430	430	2.8	2.8	0	427	0.7	0	99.3
자본적지출	70	70	0	0	0	70	0	0	100

□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현황

〈표 2-33〉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차 입 원 금	상환액	미상환잔액	상 환 기 간
299,138	45	299,093	2013. 8. 1~ 2020.12.31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11년도말 자산은 3,359억 2,637만원이고
- 2011년도말 부채 총액은 3,317억 779만원이며
- 2011년도말 자본은 42억 1,858만원으로
- 2011년도말 당기순이익은 6억 9,144만원임



〈표 2-34〉 연도별 지역개발기금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년대비 증감률(%)
자 산	계	155,799	310,838	318,871	327,246	335,926	2.7
	유 동 자 산	5,799	11,638	14,571	20,846	29,526	41.6
	고 정 자 산	150,000	299,200	304,300	306,400	306,400	0
부 채	계	153,450	308,159	315,823	323,719	331,708	2.5
	유 동 부 채	0	0	0	0	0	0
	고 정 부 채	153,450	308,159	315,823	323,719	331,708	2.5
자 본	계	2,349	2,679	3,047	3,527	4,218	19.6
	자 본 금	181	181	181	181	181	0
	자 본 잉 여 금	0	0	0	0	0	0
	이 익 잉 여 금	2,168	2,498	2,866	3,346	4,037	20.7
손 익	당 기 순 이 익	2,013	329	369	479	691	44.3
	수 익	5,761	4,980	8,074	8,377	8,683	3.7
	비 용	3,748	4,651	7,705	7,898	7,992	1.2

## (14) 재무보고서

### ① 재정상태보고서

- 2011년말 총자산은 120조 3,180억 7,475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9,654억 6,841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부채는 4조 5,093억 3,76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4,701억 2,227만원이 감소하였음
- 순자산은 115조 8,087억 3,715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4,355억 9,068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산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102조 9,680억원(85.6%)으로 대부분이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등 투자자산 14조 3,116억원(11.9%), 현금,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 2조 8,156억원(2.3%), 전산소프트웨어 등 비유동자산 2,229억원 (0.2%) 순임
- 부채는 도시철도사업지방채 1조 4,283억원(29%), 경기부양채 6,640억원(13%), 임대주택사업 차입금 6,718억원(13%),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2,991억원(6%) 등 장기차입부채가 총 2조 7,621억원(61%)으로 대부분 임.

〈표 2-35〉 재정상태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말 현재	구성비율	2010년말 현재	구성비율
자산 총계	120,318,075	100.00	119,352,606	100.00
유동자산	2,815,622	2.34	3,155,202	2.64
투자자산	14,311,606	11.88	14,365,137	12.04
일반유형자산	10,788,461	8.97	7,268,475	6.09
주민편의시설	19,883,671	16.53	22,688,335	19.01
사회기반시설	72,295,758	60.09	71,708,086	60.08
기타비유동자산	222,957	0.19	167,371	0.14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20,318,075		119,352,606	
부채 총계	4,509,338	100.00	4,979,460	100.0
유동부채	1,565,116	34.70	1,585,057	31.83
장기차입부채	2,762,061	61.25	3,221,961	64.71
기타비유동부채	182,161	4.05	172,442	3.46
순자산 총계	115,808,737	100.00	114,373,146	100.00
고정순자산	99,926,406	86.29	13,044,366	11.41
특정순자산	2,989,634	2.58	3,092,798	2.70
일반순자산	12,892,697	11.13	98,235,982	85.89

## ② 재정운영보고서

- 2011회계연도 총수익은 18조 4,345억 2,693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6,120억 7,934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비용은 16조 4,041억 8,896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5,400억 913만원이 감소하였음
- 운영차액은 2조 303억 3,796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1,520억 8,446만원이 증가하였음
- 수익은 지방세수익(12조 275억원, 65%) 등 자체조달수익이 15조 5,418억원(84%)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며,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 2조 3,327억원(13%), 기타수익 5,600억원 (3%) 임
- 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시비조조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7조 8,961억원, 48%), 운영비(위탁대행사업비 등 4조 1,377억원, 25%), 기타이전비용(민간보조금 등 1조 7,116억원, 10%) 등임

〈표 2-36〉 재정운영보고서(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1.1~12.31	구성비율	2010.1.1~12.31	구성비율
수익총계	18,434,527	100.00	17,822,447	100.00
자체조달수익	15,541,777	84.31	15,504,760	87.00
정부간이전수익	2,332,680	12.65	2,294,216	12.87
기타수익	560,070	3.04	23,471	0.13
비용총계	16,404,189	100.00	16,944,198	100.00
인건비	1,177,937	7.18	1,049,556	6.19
운영비	4,137,661	25.22	4,454,385	26.29
정부간이전비용	7,896,091	48.13	7,343,013	43.34
기타이전비용	1,711,603	10.44	1,592,124	9.40
기타비용	1,480,897	9.03	2,505,120	14.78
운영차액	2,030,338		878,249	

〈표 2-37〉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단위 : 백만원)

회 계 구 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자 산	부 채	순자산	수 익	비 용	운영차액
일반회계		90,150,785	790,377	89,360,408	15,332,416	14,168,898	1,163,519
기 특 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3,335,707	1,635,571	1,700,136	70,148	46,939	23,209
	교 통 사 업	5,676,059	719,588	4,956,471	651,047	1,091,083	△440,036
	주 택 사 업	7,467,328	1,872,032	5,595,295	971,291	363,595	607,697
	도 시 개 발	4,962,181	-	4,962,181	884,593	246,639	637,954
	하 수 도 사 업	928,994	100,136	828,858	389,737	305,415	84,322
	집단에너지공급사업	73,374	4,894	68,480	203,544	206,682	△3,138
	의 료 급 여 기 금	8,719	-	8,719	661,103	658,304	2,799
	한 강 수 질 개 선	1,538	-	1,538	12,571	10,333	2,238
	광 역 교 통 시 설	512,074	116,463	395,611	48,795	112,291	△63,496
	재 정 비 축 진	505,471	-	505,471	128,552	13,213	115,339
	소 계	23,471,445	4,448,684	19,022,760	4,021,381	3,054,493	966,888
기 금	재 정 투 용 자	4,325,008	3,135,896	1,189,112	181,301	124,156	57,145
	중 소 기 업 육 성	1,260,960	862,860	398,100	59,144	90,329	△31,185
	식 품 진 흥	69,567	-	69,567	6,839	9,628	△2,789
	기 후 변 화	93,897	-	93,897	9,236	5,553	3,683
	도 로 굴 착 복 구	17,029	-	17,029	12,788	12,037	751
	여 성 발 전	24,370	-	24,370	951	913	38
	자 원 회 수 시 설	21,398	-	21,398	24,537	17,782	6,755
	사 회 복 지	87,940	-	87,940	16,515	16,334	181
	체 육 진 흥	57,313	-	57,313	2,240	1,949	291
	감 채	1,458,543	841,407	617,136	160,099	211,428	△51,329
	재 난 관 리	565,375	173,200	392,175	134,792	215,568	△80,776
	남 북 교 류 협 력	18,229	-	18,229	682	1	681
	대 외 협 력	15,651	-	15,651	766	3,945	△3,180
소 계	8,015,280	5,013,363	3,001,916	609,890	709,624	△99,734	
지 공 기 특 회	수 도 사 업	5,203,337	384,506	4,818,831	634,664	635,690	△1,026
	지 역 개 발 기 금	335,926	331,708	4,219	8,683	7,992	691
	소 계	5,539,263	716,214	4,823,050	643,347	643,682	△335
내부거래		△6,858,698	△6,459,300	△399,398	△2,172,508	△2,172,508	-
합 계		120,318,075	4,509,338	115,808,737	18,434,527	16,404,189	2,030,338

### 3. 검토요지

#### ①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20조 9,999억 1,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7%인 5,859억 8,700만원 감소한 것임
  - 최종예산액(20조 9,999억 1,300만원)은 당초예산 20조 5,850억 원과 간주처리분 2,065억 4,900만원<sup>1)</sup>과 추경예산액 2,083억 6,3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8,832억 3,700만원을 더한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8% (6,322억 4,100만원) 감소한 21조 8,831억 5,000만원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3.0% (6,275억 3,300만원) 증가한 21조 5,532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조 6,931억 5,800만원과 특별회계 6조 8,601억 1,2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2.6%, 5,210억 4,700만원 증가한 20조 4,992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조 5,029억 6,200만원과 특별회계 5조 9,963억원 1,8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보다 1,065억 8,600만원 증가한 1조 539억 9,000만원임

1) '11회계연도에 발생된 국비간주처리는 총 9차 2,065억 4,900만원으로 1차('11. 2.23, 57억 3,700만원)~9차('11.12.30, 206억 9,000만원)하였고, 부문별 간주처리 내역은 p.117 <표 8-1> 참조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입잔액(A-B)	이월처리	
2011	총계	21,883,150 (2011최종) 20,999,913 (2010이월) 883,237	21,553,270 (98.5)	20,499,280 (93.7)	1,053,990 (4.8)	채무상환 명시이월 153,353 사고이월 260,535 계속비 보조금잔액 12,849 순세계잉여 627,253
	일반회계	14,980,631 (2011최종) 14,631,362 (2010이월) 349,269	14,693,158 (98.1)	14,502,962 (96.8)	190,196 (1.3)	채무상환 명시이월 21,154 사고이월 53,650 계속비 보조금잔액 12,633 순세계잉여 102,759
	특별회계	6,902,519 (2011최종) 6,368,551 (2010이월) 533,968	6,860,112 (99.4)	5,996,318 (86.9)	863,794 (12.5)	채무상환 명시이월 132,199 사고이월 206,885 계속비 보조금잔액 216 순세계잉여 524,494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2 2011회계연도 결산 총론

### (1) “2011년도 예산서” 중 “불법증액” 관련

○ 2011년도 예산심사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확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시 일부사업에 대하여 조정하여 의결한 바

- **초등학교 전학년 친환경무상급식** 695억 1,300만원,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 200억원, **공공근로사업** 101억원,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 7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51억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30억원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73개 사업을 증액 조정하였으나

○ 서울시는 의회가 증액한 73개 사업(3,545억 8,200만원)을 「2011년도 예산서」에 “불법증액”으로 별도 표기하고,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만을 “실집행예산”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한 의회의 의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로 일관한 바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상 서울시가 “불법증액”으로 분류한 73개 사업은 예산현액(8,592억 9,400만원)의 16.6%(1,422억 2,500만원)가 12월 31일까지 지출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됨

- 각 실·국별 증액조정된 사업<sup>2)</sup>의 예산현액중 미지출액 발생규모를 검토하면 복지건강실의 경우, 예산현액 2,589억 200만원의 21.0%, 544억 200만원이 미지출되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현액 1,031억

2) 소위 “불법증액”으로 2011년도 예산서상 별도표기한 사업

1,900만원의 32.3%, 333억 900만원이 미지출되었으며, 기획조정실은 예산현액 170억 6,900만원의 81.2%, 138억 5,300만원이 미지출되었고, 기후환경본부는 예산현액 69억 3,900만원의 99.6%, 69억 800만원이 미지출되었으며, 경제진흥실은 예산현액 545억 6,400만원의 9.6%, 52억 2,000만원이 미지출된 바 의회가 조정하여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판단됨

〈표 3-2〉 실·국별 예산집행현황 (“불법증액”으로 별도 표기한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국	당초 (서울시)	의회조정	의결	예산현액	미지출액 (12.31.기준)	(비율)
합 계	860,306	354,582	1,202,590	859,294	142,225	16.6
복지건강실	225,499	55,561	281,059	258,902	54,402	21.0
상수도사업본부	66,436	35,297	101,732	103,119	33,309	32.3
기획조정실	130,867	76,605	206,691	17,069	13,853	81.2
기후환경본부	1,639	5,300	6,939	6,939	6,908	99.6
경제진흥실	55,793	19,872	75,665	54,564	5,220	9.6
교육협력국	92,094	99,527	180,144	108,292	3,892	3.6
여성가족정책실	158,327	9,512	167,839	161,334	3,380	2.1
공원녹지국	500	3,000	3,500	3,500	3,000	85.7
도시교통본부	28,966	30,103	59,069	25,658	2,053	8.0
주택정책실	90,368	16,800	107,168	107,168	1,240	1.2
의회사무처	1,591	131	1,722	1,722	211	12.3
서울시립대학교	2,969	407	3,376	3,376	200	5.9
소방재난본부	4,631	771	5,402	5,402	184	3.4
한강사업본부	264	20	244	208	31	14.9
행정국	23	27	50	50	28	56.0
교통방송	338	1,650	1,988	1,989	0	0.0

주) <표3-1>의 “미지출액” 및 “비율”은 예산현액중 실제 지출되지 않은 예산임

○ “불법증액”으로 분류한 예산중 일부를 집행한 사업

-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소관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은 코레일이 서울역 노숙인을 퇴거조치함에 따라 서울시가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조정된 15억 5,500만원중 9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지건강실 노인복지과 소관 **저소득노인 급식제공**은 저소득노인 월동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의회가 증액조정한 예산 27억 7,9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음('11.11.29)
- 동 사례의 경우, 서울시가 “불법증액”으로 별도 구분하여 의회가 증액 조정한 예산에 대해 실집행예산까지 별도 표기하며 일체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나 세입·세출결산서상 의회가 증액조정 한 예산이 실제 집행된 바
- 의회가 의결한 결과에 집행부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하였으나 만일 동 사업을 연초에 집행하였다면, 서민을 위하여 편성되고 증액조정된 해당사업의 정책효과가 보다 많은 편익을 증진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확보를 위하여 이용('11.11.23)한 1,110억원중 서울시가 “불법증액”으로 분류한 사업에서 781억 8,600만원을 이용한 바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소관 **보육시설 운영지원(자체)사업**중 의회에서 증액조정한 51억원,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중 의회가 증액조정한 75억원,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공공근로**중 의회가 증액조정한 101억원,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소관 **학습준비물비 지원사업**중 의회가 증액조정한 52억 4,000만원,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소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중 의회가 증액조정한 502억 4,600만원을 이용하였음

- 예산의 이용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예산총칙으로써 사전의결된 것이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1심판결’에 따라 이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의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사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증액편성하여 의결한 취지가 명백히 있었으나 이용을 통하여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것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

〈표 3-3〉 이용 현황 (“불법증액”으로 별도 표기한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국	사업명	당초 (서울시)	의회 조정	의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자체)	124,321	5,100	129,421	122,426	122,402	100.0
교육협력국	친환경무상급식지원 (공립초교)	-	69,513	69,513	18,461	18,461	100.0
경제진흥본부	공공근로	21,075	10,101	31,177	21,075	20,819	98.7
교육협력국	학습준비물비 지원	5,240	5,240	10,480	5,240	5,149	98.3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8,656	7,500	36,156	25,156	22,077	87.8

○ “불법증액”의 범주에 예비비 증액(5건)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 예산심사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음<sup>3)</sup>
- 따라서 예산심사시 감액조정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조정시킨 일련의 결과조차도 “불법증액”으로 구분하고, 이를 「2011년도 예산서」로 고시한 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시민에게 허위고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이른바 예산공개 혹은 재정공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표 3-4〉 예비비 내역 (“불법증액”으로 별도 표기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 국	사업명	당초 (서울시)	의회 조정	시의회 의결
기획조정실	예비비	126,812	76,590	203,402
도시교통본부	예비비(교통관리계정)	4,486	16,923	21,409
도시교통본부	예비비(주차장관리계정)	4,211	10,780	14,991
맑은환경본부	예비비(집단에너지 특별회계)	1,604	4,300	5,904
교통방송	예비비	338	1,650	1,988

3)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0.8, p.313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중략) 단,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동의 불요”

〈표 3-5〉 주요사업(10억원 이상)별 집행 현황 (“불법증액”으로 별도 표기한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 국	사업명	당초 (서울시)	의회 조정	시의회 의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여성가족정책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자체)	124,321	5,100	129,421	122,426	122,402	100.0
복지건강본부	가금전출금(중증장애인지원사업)	-	2,000	2,000	2,000	2,000	100.0
교육협력국	친환경 무상급식지원(공립초교)	-	69,513	69,513	18,461	18,461	100.0
주택정책실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89,247	15,000	104,247	104,247	104,247	100.0
도시교통본부	장애인콜택시 운영	20,269	2,400	22,669	23,987	23,605	98.4
교육협력국	학습준비물비 지원	5,240	5,240	10,480	5,240	5,149	98.3
교육협력국	교육경비지원(조례상전출금)	86,854	24,774	100,150	84,591	80,789	95.5
상수도사업본부	음수대 설치사업	1,780	1,220	3,000	1,975	1,852	93.8
상수도사업본부	옥내배관 관리개선	4,195	3,822	8,017	5,344	4,895	91.6
복지건강본부	자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2,745	1,090	13,835	13,729	12,387	90.2
복지건강본부	국가예방접종사업	8,729	12,740	21,469	8,729	7,866	90.1
복지건강본부	거리노숙인 보호	3,132	1,555	4,686	5,366	4,809	89.6
복지건강본부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	6,169	1,000	7,169	8,394	7,390	88.0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8,656	7,500	36,156	25,156	22,077	87.8
주택정책실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추진	710	1,000	1,710	1,710	1,499	87.6
복지건강본부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	9,779	1,200	10,979	10,929	9,316	85.2
복지건강본부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56	2,779	12,835	14,643	11,963	81.7
복지건강본부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75,940	20,000	95,940	84,377	49,839	59.0
상수도사업본부	세척갱생관로 정비	15,000	10,000	25,000	25,991	15,025	57.8
상수도사업본부	송배수관 정비사업	40,350	20,000	60,350	64,608	43,051	66.6
복지건강본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보조)	1,933	4,250	6,183	6,538	2,131	32.5
공원녹지국	열린학교조성(학교공원화)	500	3,000	3,500	3,500	499	14.3
경제진흥본부	공공근로	21,075	10,101	31,177	20,819	256	1.23
복지건강본부	경로당 현대화사업	0	3,000	3,000	3,000	-	-

## (2) 집행부의 결산검토 비협조

-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①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②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5)
- 금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경우, 2012년 6월 8일 시의회에 15쪽 분량의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접수시켜 형식적인 제출기한은 준수함
- 그러나 집행부는 회의규칙에 명기된 의안의 제출시점이 경과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결산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은바
-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출시점과 제1회 정례회의 의사일정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안전에 대한 검토기한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와 첨부자료 등을 지연제출한 것은 서울시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단순히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의회의 사후승인에 불과한 형식적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에 따라 작성된 해당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결과적으로 제1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와 첨부자료를 6월 13일부터 제출한 것은 시의회로 하여금 안전을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사료되어 차년도 결산심사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표 3-6〉 결산심사 자료제출 관련

제출목록	제출일자	비 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2. 6. 8	
세입·세출결산서	2012. 6.13	
재무보고서	2012. 6.13	인쇄 오류로 정정(6.14)
결산검사의견서	2012. 6.13	"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2. 6. 8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2. 6. 8	

-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 자료 제출에서 나타난 사례에 대하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연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는 점에서 일선에서 직무에 전념하는 실무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자료를 지연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 (3)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결산심사 효율화

#### ① 검토의 필요성

- 결산안의 제출기한을 지방재정법에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가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의사일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결산심사가 예산의 집행결과를 단순히 사후승인하는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sup>6)</sup>
- 따라서 결산안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와 제1차 정례회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결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회 예산감시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② 결산심사 운영현황

-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sup>7)</sup> 수입·세출결산서와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sup>8)</sup>
- 지방의회는 제1차 정례회중 단체장이 제출한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sup>9)</sup>

6) 국회는 매년 5월31일까지 제출된 전년도 결산안을 9월 정기회 이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결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기간이 약 4개월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결산안을 6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함.

7)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수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

### ③ 문제점(결산안 제출기한의 불명확성)

-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제출 및 의결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sup>10)</sup> 결산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①에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될 수 있음
- 결산안 제출기한이 불명확하고, 촉박한 심사일정으로 결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음
  -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관례적으로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심사일정이 통상 10일 미만으로 운영되어 결산검사의견서, 시민단체, 여론 및 민원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산심사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결산안 제출기한에 대한 불명확성과 심사일정 부족 등으로 결산심사가 예산의 집행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통과 의례적 의사일정으로 고착화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 감시권을 약화시킬 수 있음

### ④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건의 필요
-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도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는바<sup>11)</sup>

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결산안의 경우에도 법령으로 제출기한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①에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개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결산안의 제출기한을 5월31일로 개정하여 결산안과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필요

- 결산심사 이전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결산검사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의 결과보고서 제출후 제1차 정례회까지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 제1호에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도록 정한 것을 매년 6월 30일, 7월 1일, 7월10일중 적정일을 선정하여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1차 정례회는 30일 이내, 제2차 정례회는 40일 이내로 정하여 심사일정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경우, 집행부가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일을 순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①에 세입·세출결산서와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여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시기는 현행과 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11)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3-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결산심사과정

구분	중앙정부	근거법령	지방정부	근거법령
회계연도종료	12월31일	국가재정법 제2조	12월31일	지방재정법 제6조
출납폐쇄일	다음해 1월15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5조~7조	다음해 2월말	지방재정법 제8조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다음해 2월10일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	다음해 3월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조2항
결산서작성	다음 연도 4월 10일 까지 감사원에 제출	국가재정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결산검사	감사원	헌법 제99조	결산검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결산승인안 의회제출시한	5월31일	국가재정법 제61조	6월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결산 심의·의결 처리시한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매년 9월1일)	국회법 제128조의2	제1차 정례회기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제출자료목록	<p><b>국가회계법 제14조~제16조</b></p> <p><b>① 결산보고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산 개요</li> <li>2. 세입세출결산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포함,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의미)</li> <li>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li> <li>4. 성과보고서</li> </ol> <p><b>②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속비 결산명세서</li> <li>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li> <li>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li> <li>4. 이월명세서</li> <li>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li> </ol>	<p><b>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b></p> <p><b>① 세입·세출 결산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입·세출 결산보고서</li> <li>2. 계속비 결산보고서</li> <li>3.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li> </ol> <p><b>② 결산검사의견서</b></p> <p><b>③ 재무보고서</b></p> <p><b>&lt;참고&gt;</b>  <b>2011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b>  (행정안전부2011.12.2.)p.16~19</p> <p><b>① 세입·세출 결산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입·세출 결산보고서</li> <li>2. 기금결산보고서</li> <li>3. 채권현재액보고서</li> <li>4. 채무결산보고서</li> <li>5.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li> <li>6.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li> <li>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li> <li>8. 예비금 사용명세서</li> <li>9. 「국가채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li> <li>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li> </ul> <p><b>③ 기금 수입지출결산 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원조성실적표</li> <li>2. 성인지 기금결산서</li> <li>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li> </ul> <p><b>④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합재정수지표</li> <li>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li> </ul> <p><b>⑤ 재무제표 첨부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채무관리보고서</li> <li>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li> <li>3.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li> <li>4.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li> </ul>	<p><b>② 부속서류(결산수지상황 총괄등 14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산수지상황 총괄</li> <li>2.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li> <li>3. 세입세출결산 총규모</li> <li>4. 전년도 결산대비</li> <li>5.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li> <li>6.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li> <li>7.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li> <li>8.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li> <li>9.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li> <li>10.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li> <li>11. 보조금 집행현황</li> <li>12. 주요사업 추진현황</li> <li>13.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li> <li>14. 보증채무 현재액</li> </ul>
--	--

### 3 세입결산 관련

####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차입금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14조 6,931억 5,800만원)와 12개 특별회계(6조 8,601억 1,200만원)를 합한 21조 5,532억 7,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0%, 6,276억 3,300만원 증가된 것임
-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당초 징수결정액(22조 8,575억 2,100만원)보다 1조 3,042억 5,100만원이 미수납된 바 이는 지난 2010회계연도 보다 미수납액이 371억 7,900만원 증가한 것임
- 2011회계연도 미수납액 발생규모는 여전히 1조원 이상 발생되고 있고, 2011회계연도에도 경기불황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표 3-8〉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2011	22,857,521	21,553,270	1,304,251	94.3
2010	22,192,709	20,925,637	1,267,072	94.3
2009	24,869,476	23,683,001	1,186,475	95.2

##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① 시세 세입관련

- 시세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의 주요재원이 되는 바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액은 11조 6,989억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2조 7,970억 3,500만원) 대비 91.4%가 수납되어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91.4%)과 비교할 때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9〉 시세 세입결산 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0	2009
예산현액	11,200,566	11,595,724	11,216,511
징수결정액 (A)	12,797,035	11,988,317	11,775,671
실수납액 (B)	11,698,959	10,953,331	10,826,303
징수율 (B/A, %)	91.4	91.4	91.9

- 다만, 과오납반환액의 경우, 지난 2010회계연도(2,621억 9,700만원)보다 71억 4,400만원 감소된 2,550억 5,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취득세 과오납반환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보다 393억 4,900만원 증가된 바 이는 취득세율 5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11. 3.22)됨에 따라 기납부한 취득세중 일부를 환급하였기 때문임

〈표 3-10〉 지방세 세목별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액 ①	수납총액 ②	과오납반환 ③	실수납 ④=②-③	미수납 ⑤=①-④	과오납반환/수납액 ③/②
취득세	2,828,692	2,850,469	56,415	2,794,054	34,638	1.98
주민세	66,713	59,777	307	59,470	7,243	0.51
재산세	1,797,575	1,761,001	2,722	1,758,279	39,296	0.15
자동차세	1,065,053	1,021,100	12,840	1,008,260	56,792	1.26
레저세	161,237	161,237	-	161,237	-	-
담배소비세	557,798	557,798	-	557,798	-	-
지방소비세	464,867	464,867	-	464,867	-	-
지방소득세	3,665,183	3,571,760	127,179	3,444,581	220,601	3.56

○ 2011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을 직전 회계연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5조가 명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주요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직의 확대·강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매 회계연도 시세수입 현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취득세<sup>12)</sup>, 재산세<sup>13)</sup> 등의 세목이 서울시 지방세 수입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재산과세적 성격의 세입원은 사회경제적 변동요인에 따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세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세입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12) 2011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의 27.3%, 2조 7,940억 5,400만원이 실수납 됨

13) 2011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의 17.2%, 1조 7,582억 7,900만원이 실수납 됨



○ 따라서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건의<sup>14)</sup>한 사례와 같이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서울시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현실적 기대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②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2011회계연도의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은 1조 980억 7,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률은 지난 회계연도와 동일한 8.6% 수준이며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도 직전 회계연도보다 331억 3,100만원 감소된 2,322억 9,500만원으로 나타나 시세 세입이 당초 계획에 근접하여 징수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세 수입은 세출예산의 근간을 구성하는 바 지방세 수입이 매 회계연도마다 1조원 이상 미수납되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생 원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사하고, 개별사례에 대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징수 조치해야 할 것임

〈표 3-11〉 시세세입 수납현황 (2011~2006)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2011	12,797,035	11,698,959	1,098,075	91.4	8.6
2010	11,988,317	10,953,331	1,034,986	91.4	8.6
2009	11,775,671	10,826,303	949,368	91.9	8.1
2008	12,363,636	11,295,077	1,068,559	91.4	8.6
2007	11,340,130	10,310,205	1,029,925	90.9	9.1
2006	10,987,207	10,005,543	981,664	91.1	8.9

14) 세제과-1220, 2012. 1.31

○ 그러나 시세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감소된 것과는 달리 시세를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962억 2,200만원 증가한 2,322억 9,5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 수년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겠으나 서울시가 매년 납부가 지체되는 시세를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징수의무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루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시세는 당해연도에 수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징수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세 체납문제가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8월 체납시세를 집중관리하는 38세금징수팀을 신설한 이후 확대 강화시키기 보다는 부서축소('10. 9) 등의 역진적 개편도 있었던 바 체납시세를 적극 관리한다는 분명한 의지로 해당 부서에 대한 확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표 3-12〉 시세 세입중 미수납 현황 (2011~2006)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미수납계 ①	결손처분 ②	②/①	다음연도이월 ③	③/①
2011	1,098,075	232,295	21.2	865,780	78.8
2010	1,034,986	265,426	25.6	769,560	74.4
2009	949,368	249,270	26.3	700,098	73.7
2008	1,068,559	295,637	27.7	772,922	72.3
2007	1,029,925	327,628	31.8	702,297	68.2
2006	981,664	271,209	27.6	710,455	72.4

〈표 3-13〉 38세금징수와 조직개편 현황

개편시기	부서형태	인원	비고
2001. 8	팀	25명	신설
2008.12	과	33명	확대
2010. 9	기동대 ("반" 성격임)	27명	축소
2012. 1	과	37명	확대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⑧

○ 뿐만 아니라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된 시세 미수납 사유에 있어서도 “무재산, 고질체납”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무재산”에 따른 지방세 미납사례는 매 회계연도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1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보다 658억 4,200만원 이나 증가되고 있으며 체납자가 부동산 압류 등 서울시의 행정력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은닉시키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4〉 시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2011~2006)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2011	865,781 (100.0)	2,123 (0.3)	51,109 (5.9)	222,008 (25.6)	165,236 (19.1)	350,799 (40.5)	74,506 (8.6)
2010	769,560 (100.0)	5,059 (0.7)	42,367 (5.5)	156,166 (20.3)	206,433 (26.8)	317,585 (41.3)	41,950 (5.4)
2009	700,098 (100.0)	5,002 (0.7)	42,009 (6.0)	163,403 (23.3)	185,530 (26.5)	272,809 (39.0)	31,345 (4.5)
2008	772,922 (100.0)	8,816 (1.1)	26,879 (3.5)	125,100 (16.2)	188,686 (24.4)	391,502 (50.7)	31,939 (4.1)
2007	702,297 (100.0)	145 (0.0)	33,197 (4.7)	103,250 (14.7)	185,510 (26.4)	366,350 (52.2)	13,845 (2.0)
2006	710,455 (100.0)	1,446 (0.2)	26,170 (3.7)	59,157 (8.3)	241,261 (34.0)	360,445 (50.7)	21,976 (3.1)

### ③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수입원이나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시세수입처럼 경기변화에 따라 수입규모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주재원이라는 한계가 있음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934억 2,800만원 미수납된 8,131억 6,200만원이 실수납되어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지방세 수입결산 감소사례와 같이 수년간 지속된 경기불황의 결과로 인식될 수도 있고
-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세외수입은 매각 및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2012년까지 감소 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었을 것임
- 그러나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은 이미 예산편성당시 한강예술섬건립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과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세외수입 수입예산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2,481억 6,300만원 적게 편성한 1조 2,017억 9,800만원으로 의결한 바
  - 수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실제 징수근거에 기반한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하여도 예산액(1조 2,017억 9,800만원)과 징수결정액(9,065억 9,900만원)이 2,952억 80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며, 예산액(1조 2,017억 9,800만원)과 실수납액(8,131억 6,200만원)은 3,886억 3,600만원이나 차이가 있음

-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예산액이 1조 2,017억 9,800만원이나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3,129억원이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으로 이전됨으로써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이 예산액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바
-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예산편성시 의회에 제출한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을 추계하는 시스템에 구조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점검하고,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3-15〉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2011~2006)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예산액 ①	1,201,798	1,449,961	2,119,347	1,881,548	2,680,948	1,161,437
예산현액	1,551,068	1,738,243	2,539,774	2,206,873	2,946,470	1,439,818
징수결정액 ②	906,590	1,696,399	2,284,260	2,199,889	2,431,671	1,700,312
실수납액 ③	813,162	1,586,789	2,164,900	2,114,655	2,354,514	1,233,073
미수납액	93,428	109,610	119,360	85,234	77,157	467,239
징수율 ③/②	89.7	93.5	94.8	96.1	96.8	72.5
징수결정액/예산액 ②/①	<b>75.4</b>	117.0	107.8	116.9	90.7	146.4
실수납/예산액 ③/①	<b>67.7</b>	109.4	102.1	112.4	87.8	106.2

-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서울시의 주요 세출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실·국 및 사업소는 소액의 세입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의무라 사료되나 세외수입관리를 소홀히한 사례가 있어 향후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세외수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 '08년도에 개최한 “부르델조각전”의 대관료 수입 1억 3,200만원중 15.2%인 2,000만원만 수납('08. 4.28)되고, 1억 1,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에도 이를 즉각 징수결정하여 미수납 이월액<sup>15)</sup>으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납부의무자에게 분납기한을 4회에서 7회로 임의연장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바
  - 동 미납사례가 서울시가 실시한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점검에서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요구되자<sup>16)</sup> 미수납된 대관료수입중 6,200만원을 수납('11.12. 8)하고, 미수납잔액 5,000만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 시점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다음연도이월액으로 징수결정한 것은 세외수입을 방만히 관리한 사례라 판단됨
  - 현행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에는 부과후 5년이 경과되면 채권·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동 미수납액은 '13년 6월이후 결손처리된다는 점에서 '11회계연도에 징수결정된 미수납 이월액 5,000만원이 징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립미술관은 '05년 8월 발생한 미수납액 544만원을 '10회계연

15) 미수납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은 다음연도에 징수하도록 하는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어 시한이 경과될 경우, 미수납액은 “결손액”으로 처리하게됨

16) 세무과-112383, '11. 6. 2

도에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어 서울시 자체조사 등에서 지적되지 않았을 경우, 동 미수납액도 선례와 같이 결손처분하는 편의적 방안으로 문제를 해소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미수납액을 적극징수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고, 세외수입 관리부실사례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직영하는 3개 시립병원중 **은평병원**은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09.11.9) 민간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임상시험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바 2011년도의 경우, 민간제약회사와 임상시험대행기관으로부터 5개의 임상시험용역을 의뢰받아 3,977만원의 용역비를 수령한 바<sup>17)</sup>

〈표 3-16〉 임상시험용역 현황 (2011년도)

(단위 : 천원)

연 번	임상시험 의뢰자	임상시험용역비
합 계		39,779
1	드림씨아이에스	1,875
2	한국오츠카제약	16,674
3	한국얀센(주)	6,924
4	한국오츠카제약	11,306
5	정신사회재활협회	3,000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민간제약회사 등으로 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임상시험용역이라 할지라도 동 임상시험용역비는 세외수입에 해당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① 즉, 예산총계주의 원칙<sup>18)</sup>에 따라 반드시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7) 보건정책과-22827 ('12. 6.21)

18)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하 생략)

- 그러나 복지건강실의 경우, 용역비를 세입조치하지 않는 근거로 약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등을 제출하고, 지방재정법 제16조 등을 근거로 동 용역비가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하여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 등은 수입의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sup>19)</sup>
- 복지건강실이 제출한 약사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임상시험의 실시기준 등”을 명시한 것으로 질의내용과 무관한 법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용역비가 수입대체경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조치해야 할 대상인지조차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동 용역비에 대하여 서울시의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모두 세입조치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고,<sup>20)</sup>
- '12년 2월 감사원이 실시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임상시험 관련 연구비 지급 운영 실태점검”<sup>21)</sup>에서도 임상시험용역비를 세입처리하여 사용하지 않은 점, 병원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임상시험용역비를 운영한 점 등이 지적된 바
-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수행한 임상시험용역에서 발생하는 용역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조치하여야 할 대상이며 해당 부서가 수입대체경비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지출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됨

19) 보건정책과-22826 ('12. 6.21), 23174 ('12. 6.22)

20) 세무과-12668('12. 6. 20)

21) 감사일시 : 2012. 2.22~2.24, 감사관 : 송○○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은평병원은 시직영 사업소이며 해당 의료인 또한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동 용역비는 반드시 세입예산으로 수납하고, 필요시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④ 지방교부세 관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2,035억 1,200만원)보다 12억 9,900만원 초과한 2,048억 1,200만원이 교부되었음
- 서울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비교부단체로 부동산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와 분권교부세<sup>22)</sup>가 지방교부세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관계법령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폐지되어 지난 2010회계연도부터 서울시에 교부되지 않음<sup>23)</sup>
- 특히, 수년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취·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던 부동산교부세가 폐지되고, 대체재원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한 지방소비세가 지원되고 있으나
  - 201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는 6,616억 1,100만원<sup>24)</sup>이 수납된 반면 지방소비세는 4,276억 7,700만원이 수납되어 당초 정부가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교환형태라 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 서울시의 세입은 2,339억 3,400만원 감소된 결과를 발생시켰음
  - 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세

22) 분권교부세는 2014년까지만 교부되며 2015년 이후 국고보조금에 통합될 예정임

23) 2011회계연도의 부동산교부세 739억 4,5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통보(재정정책과-842, '11. 2. 25)에 따른 2009년도 정산분임

24) 2010회계연도 부동산교부세 수납액은 6,616억 1100만원으로 예산액(9,109억 9,800만원)보다 2,793억 8,700만원 미수납되었음

입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10%를 교육청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주재원의 성격을 갖는 지방소비세의 실익이 낮은 바 부동산교부세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의 안분비율을 상향 요구하고, 서울시의 특수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표 3-17〉 지방교부세 수입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도	과목명	예산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2011	계	203,512	204,811	△1,299
	부동산교부세 <sup>주1)</sup>	73,945	73,945	0
	분권교부세	123,280	123,379	△99
	특별교부세	6,287	7,487	△1,200
2010	계	137,344	141,782	△4,438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2,000	△2,000
	특별교부세	17,344	19,782	△2,438
2009	계	1,073,745	785,695	288,050
	부동산교부세	940,998	661,611	279,387
	분권교부세	120,029	111,366	8,663
	특별교부세	12,718	12,718	0

※ 주1) 2011년도 부동산교부세는 2009년도 미정산분임

## ⑤ 국고보조금 관련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예산액(1조 3,599억 8,100만원)보다 326억 2,800만원 적은 1조 3,273억 5,300만원이 교부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국고 보조금액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특히, 국비 매칭사업에 발생하는 불용, 사고이월 등의 사례는 중앙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에 합의된 국고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빈번히 발생되고, 복지부문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하거나 사업량을 축소하는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대응 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바
-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응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초 내시된 국비가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 2011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이 세입결산액의 1.4%, 국고보조금이 9.8%를 구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2011년도 예산개요에 기재된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세입예산과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비교할 경우<sup>25)</sup>

25) 동 검토에서 “세입예산”은 각 자치단체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정하여 세입

- 지방교부세는 서울시가 세입예산의 0.6%, 1,200억원, 경기도는 세입예산의 1.7%, 2,23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서울시가 세입예산의 6.9%, 1조 3,767억원, 경기도는 세입예산의 26.1%, 3조 3,43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기재하고 있음

〈표 3-18〉 2011년도 서울시와 경기도 세입예산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서울시 <sup>주1)</sup>		경기도 <sup>주1)</sup>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계	199,962	(100.0)	128,086	(100.0)
일반회계 <sup>주2)</sup>	144,550	(72.3)	107,513	(83.9)
시 세	117,565	58.8	62,990	49.2
세 외 수 입	12,018	6.0	8,852	6.9
<b>지방교부세</b>	<b>1,200</b>	<b>0.6</b>	<b>2,232</b>	<b>1.7</b>
<b>국고보조금</b>	<b>13,767</b>	<b>6.9</b>	<b>33,439</b>	<b>26.1</b>
특별회계 <sup>주2)</sup>	55,412	(27.7)	20,573	(16.1)
자 체 수 입	34,749	17.4	14,975	11.7
타 회 계 전 입 금	15,904	8.0	-	-
국 고 보 조 금	4,759	2.4	5,598	4.4

※ 주1) 서울시, 경기도 본청 기준

주2) 일반회계중 지방채, 특별회계중 공채 및 차입금 제외

자료 : 2011년도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개요, p.22 및 2011년도 경기도 예산개요, p.102중 발췌

-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재정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매년 서울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자치단체간 자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현행 지방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중앙정부가 2011년도에 16개 광역시·도(본청 및 자치구 포함)에 지원하는 예산을 비교할 경우, 서울시는 3조 2,037억원을 지원받

았으나 이는 대구광역시(3조 2,116억원)와 유사한 규모로 서울시의 경제활동인구 및 도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16개 시·도(본청 및 자치구 포함)에 교부된 의존재원을 주민수로 나누었을 경우, 서울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최하위로 주민1인당 의존재원예산액은 203,000원에 불과하나 서울시보다 주민수나 연간 세출예산액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주민1인당 의존재원예산액이 47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한 교부기준이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시와 비교하여 행정구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광역시의 경우에도 주민1인당 의존재원예산은 최대 998,000원(광주광역시)부터 최하 581,000원(울산광역시)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재도가 오히려 자치단체의 세출규모나 사회환경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서울특별시에 대한 역차별적 재정정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등으로 정부기관과 산하조직이 이전할 경우, 서울시의 경제활동인구도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소득세 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바
-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감소분을 미리 예측하여 세입결손분을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으로 요구함으로써 향후 세출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표 3-19〉 시·도별 중앙정부 지원예산 규모(2011년)

(단위 : 억원, 괄호는 시·도별 순위)

시·도	중앙정부지원 <sup>주1)</sup>			주민1인당 의존재원 예산액 <sup>주2)</sup> (단위 : 원)
		교부세	보조금	
<b>서울</b>	<b>32,037 (11)</b>	<b>2,371</b>	<b>29,666</b>	<b>203,000 (16)</b>
부산	42,178 (9)	10,725	31,453	898,000 (11)
대구	32,116 (10)	8,399	23,717	988,000 (10)
인천	26,876 (12)	4,612	22,264	689,000 (13)
광주	19,419 (13)	5,436	13,983	998,000 (9)
대전	14,647 (15)	3,909	10,738	695,000 (12)
울산	9,029 (16)	2,254	6,775	581,000 (14)
경기	91,416 (3)	17,537	73,879	476,000 (15)
강원	61,129 (7)	27,710	33,419	2,954,000 (3)
충북	46,509 (8)	18,684	27,825	2,150,000 (7)
충남	62,291 (6)	23,809	38,482	2,156,000 (6)
전북	70,366 (5)	28,410	41,956	2,761,000 (4)
전남	94,548 (2)	36,991	57,557	3,599,000 (1)
경북	97,617 (1)	44,463	53,154	2,711,000 (5)
경남	80,453 (4)	30,216	50,237	1,745,000 (8)
제주	18,317 (14)	8,615	9,702	3,179,000 (2)

주1) 시·도 분청 예산 및 각 기초자치단체예산 포함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p.233

주2) 주민1인당 의존재원예산액은 시·도별 의존재원수입을 주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천원이하 절사)

- 재정고([http://lofin.mopas.go.kr/lofin\\_stat/budget/gyumo/Gyumo\\_SoonChong\\_01.jsp](http://lofin.mopas.go.kr/lofin_stat/budget/gyumo/Gyumo_SoonChong_01.jsp))

(3) 특별회계 세입결산<sup>26)</sup>

-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6조 9,025억 1,800만원에 대하여 6조 8,601억 1,2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9.4%로 최근 수년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특별회계 세입에서 발생된 미수납액의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보다 97억 2,600만원 감소된 1,127억 5,000만원으로 나타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추계가 정밀해진 것으로 사료되나

〈표 3-20〉 특별회계 세입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대비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
			계	결손처분	차년도이월액		
2011	6,972,860	6,860,112	112,750	2,816	109,932	99.4	98.4
2010	6,413,697	6,291,221	122,476	2,226	120,250	95.1	98.1
2009	7,441,404	7,323,656	117,748	4,960	112,788	93.0	98.4

-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가 전체 미수납액의 78.7%(886억 9,900만원)를 차지하는 바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것과 같이 미수납 발생사유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26) 10개 기타특별회계, 2개 공기업특별회계

〈표 3-21〉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b>기타특별회계</b>	<b>86,595</b>	<b>1,374</b>	<b>75</b>	<b>2,510</b>	<b>24,574</b>	<b>6,324</b>	<b>51,738</b>
도시철도건설사업	-	-	-	-	-	-	-
<b>교통사업</b>	38,693	1,374	36	2,451	-	4,482	<b>30,350</b>
<b>주택사업</b>	22,663	-	1	-	<b>22,660</b>	-	2
도시개발사업	1,053	-	-	-	-	1,053	-
<b>하수도사업</b>	6,567	-	38	59	<b>1,776</b>	789	<b>3,905</b>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38	-	-	-	138	-	-
의료급여기금	-	-	-	-	-	-	-
한강수질개선사업	-	-	-	-	-	-	-
광역교통시설사업	17,481	-	-	-	-	-	17,481
재정비축진	-	-	-	-	-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174억 8,100만원)은 2011년도 부담금 징수결정액 279억 8,100만원과 부담금 수납액 104억 9,900만원의 차액으로 2011년도에 부담금을 징수결정하고, 납부기한은 2012년 1월~12월까지인 바 2011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 174억은 당해연도 부과분 중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임.

- 그러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미수납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유를 기타(303억 5,000만원), 소송 및 재산압류중(44억 8,200만원), 무재산(24억 5,100만원), 징수유예(13억 7,400만원) 등으로 구분하여 미수납액이 다음연도에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 동 특별회계의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촉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발생사례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를 전체 규모의 78.4%로 구분하는 것은 미수납액을 편의적으로 구분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기타” 사유에 따른 미수납액중 “과태료 미납액”이 202억 500만원 포함되어 있어 동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입 미수납액은 고의적인 납세지연 즉, “납세태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 사유로 포괄하여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부적합한 미수납관리 사례로 판단됨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 사유를 기타(39억 500만원), 납세태만(17억 7,600만원) 등으로 구분하여 미수납액을 관리하고 있으나

- “하수도 사용료”를 고의적으로 납부 지연하는 “납세태만” 사례가 대부분임에도 “기타”를 전체 발생규모의 59.5%로 포괄하여 분류하고 있는 바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타” 사유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고의적인 납세지연 즉, “납세태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물론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의 총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하여도 세입의 수납과정에서 발생한 미수납 발생사례는 개별적으로 발생사유를 명확히 검토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한 분류는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정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발생사유중 납세태만이 전체의 27.0%, 17억 7,600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체납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야할 해당 구청과 수도사업소가 체납액 징수에 적극성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세출결산 관련

### (1) 불용액 관련

-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4%인 9,699억 8,2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6,839억 3,900만원 감소된 9,699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11회계연도의 경우, 2011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3,826억 8,000만원을 감액조정한 바 있어 1조원에 근접한 불용액 발생규모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됨

〈표 3-22〉 불용 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0	2009
예산현액	21,883,150	22,515,391	25,338,774
불용액 (불용률)	969,982 (4.4)	1,653,921 (7.3)	1,641,840 (6.5)
일반회계 (불용률)	402,865 (2.7)	963,900 (6.1)	917,249 (5.3)
특별회계 (불용률)	567,117 (8.2)	690,021 (10.4)	724,591 (9.2)

※ 불용액 비율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특별회계(10개) 포함.

- 다만,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발생규모가 과다한 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대비 4.4%인 9,699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지난 1년간 서울시가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은 하였으나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을 더욱 감소시켜야 할 것임
- 아울러 예산총괄부서는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실·국, 사업소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장역점 사업, 부서장의 의욕 등을 앞세워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23〉 불용액 발생사유(2011~20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	예비비
2011	969,982 (100.0)	161,287 (16.6)	29,036 (3.0)	533,288 (55.0)	12,843 (1.3)	233,528 (24.1)
2010	1,653,921 (100.0)	862,206 (52.1)	179,055 (10.8)	540,549 (32.7)	9,841 (0.6)	62,270 (3.8)
2009	1,641,840 (100.0)	479,540 (29.2)	31,483 (1.9)	952,704 (58.0)	35,080 (2.1)	143,033 (8.7)

※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특별회계(10개) 포함.

-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불용액 발생사유중 55.7%인 5,332억 3,5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과다한 예산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예산 편성 당시 반드시 실제 집

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불용액 발생사유중 16.6%, 1,612억 8,7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 바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집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기후환경본부(320억 9,400만원), 복지건강실(255억 7,300만원), 공원녹지국(251억 6,800만원), 도시안전실(219억 100만원), 경제진흥실(189억 7,100만원) 등을 포함한 실·국은 반드시 불용액 발생 원인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표 3-24〉 실·국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불용액계 (전체 대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부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969,484 100	161,313 16.6	29,036 3.0	533,210 55.7	12,843 1.4	233,083 23.0
도시계획국	200,934 (20.7)	10,800	380	5,794	21	183,939
도시교통본부	180,829 (18.7)	621		178,269	216	1,723
복지건강실	103,904 (10.7)	25,573	262	73,308	4,761	
도시안전실	74,183 (7.7)	21,901	709	50,220		1,353
상수도사업본부	74,009 (7.6)	3,040	17,486	45,508		7,976
주택정책실	57,371 (5.9)	6,625	372	36,377		13,997
기후환경본부	57,358 (5.9)	32,094	71	18,591	698	5,904
공원녹지국	44,916 (4.6)	25,168	551	18,978	219	
경제진흥실	38,230 (3.9)	18,971	2,474	12,549	4,236	
소방재난본부	26,945 (2.8)	37	2,342	24,533	3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1,157 (2.2)	7,156	581	12,288	1,132	
행정국	18,833 (1.9)	220	81	18,476	56	
기획조정실	15,650 (1.6)		388	1,481		13,781
여성가족정책실	14,029 (1.4)	1,517	9	11,108	1,395	
재무국	6,654 (0.7)	1,480		5,174		
한강사업본부	5,683 (0.6)	248	12	5,423		
교육협력국	4,911 (0.5)	4,414		497		
교통방송	4,852 (0.5)			2,863		1,989
도시기반시설본부	4,052 (0.4)	343		1,288		2,421
정보화기획단	3,331 (0.3)	370	283	2,643	35	
서울역사박물관	3,165 (0.3)	324	1,380	1,461		
시민소통기획관	2,427 (0.3)	42	22	2,343	20	
시의회사무처	2,085 (0.2)	232	177	1,676		
서울시립대학교	1,836 (0.2)	81	962	793		
시립미술관	1,015 (0.1)		400	615		
기술심사담당관	475 (0.05)	10	36	429		
인재개발원	393 (0.04)	32	28	333		
감사관	100 (0.01)		11	89		
비상기획관	89 (0.01)	14	19	35	21	
대변인	68 (0.01)			68		

주)괄호( )는 각 실·국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별 비율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불용액 제외

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사업인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소관)중 운수업계보조금은 예산현액대비(2,980억원) 18.2%인 543억 2,300만원이 불용된 바<sup>27)</sup>

- 당초 서울시에 안분될 유가보조금을 2,980억원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토해양부가 16개 시·도에 안분비율을 통보함에 따라<sup>28)</sup> 2011년도에 서울시에 안분될 유가보조금으로 2,575억 6,300만원이 확정되어 기편성된 예산중 543억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임<sup>29)</sup>

- 동 사업의 경우,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유가변동에 따른 예산과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 2011회계연도에는 예산편성시 유가보조금 안분액과 국토해양부가 실제 통보한 안분액 간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향후 주행세 수입 및 유가변동 추이의 정확한 예측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 집행하였으나 예산현액대비(843억 7,700만원) 40.9%인 345억 3,700만원이 불용된바

27)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의 경우,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154억 4,100만원) 26.0%인 40억 5,700 만원이 불용된바, 이는 대폐차량이 CNG버스로 교체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차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8) 관련 : 국토해양부 2011년도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통보(대중교통과-1723, 2011.4.29)

29) 관련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1조3항에는 유가보조금은 안분액의 범위내에서 세출 예산집행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서울시의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활동영역을 확대 지원하고자 현행 1일 7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소요예산 200억원을 반영하여 의결하였으나 이를 “불법증액”으로 별도표기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불용시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표 3-25〉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서울시 제출	의회 증액	의 결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75,940	20,000	95,940	34,538	36.0	시의회증액분 미집행 장기요양제도시행 국고보조금 감내시

- 특히, 동 사업은 2011년 10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에 3억 5,400만원을 전용한 바 있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2011년 11월에 보건복지부가 사업변경 및 국고 감내시를 통보함에 따라 예산액(959억 3,900만원)중 112억 800만원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로** 변경 사용하였음
- 물론 예산전용이나 예산변경이 지방재정법 제47조가 명시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예산운용방안이라 하여도 동 사업의 정책대상집단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소요예산의 증액과 조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불법증액으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따른 대규모 불용액(345억 3,700만원)이 발생된 바 사업주관부서가 동 사업에 대한 의회의 취지와 중증장애인의 실제 생활 환경을 이해하였다면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될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예산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운영**은 외부온도 상승에 따른 난방사용량의 감소로 LNG 연료구입비 감소분 124억원 및 열요금 인하대책('11.2)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38억원 등 예산현액(2,071억 5,300만원)의 9.8%, 203억 3,6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소관)는 지난 2010년도 예산심사시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종로 귀금속지구 등에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임<sup>30)</sup>
  - 그러나 동 사업은 지난 2010회계연도에 임차대상건물 선정 및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등이 지연되어 기편성된 예산중 169억 5,7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으며
  -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동 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와 단성사간에 체결된 가계약 특약사항을 단성사가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 169억 5,700만원)중 시설비(10억 1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5억 1,500만원)등 15억 5,300만원만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0.8%, 154억 400만원을 불용시킨 바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할 경우 대상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등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동 사업이 사업계획변경 및 관련 당사자간 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부서가 동 사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2010년도에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요청하며 사업을 추진한 초기의 적극성마저 상실한 행태라 사료되는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됨

30) 행정1부시장-제176호, '10. 4. 2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소관)은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의 공정률이 2011년 12월까지 80%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미지급된 중도금 등 예산현액(2,757억 1,500만원)의 5.4%, 148억 2,3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2010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2,405억 5,300만원)의 8.1%, 194억 2,100만원이 불용된 바 있고, 2009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5,025억 5,300만원)의 24.3%인 1,221억 3,700만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음

- 매 회계연도 마다 발생하는 불용액의 발생사유가 서로 상이하더라도 매년 10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추경 등을 통하여 기편성된 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물론 차년도 예산편성시 소요예산 규모를 감액 조정하는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재정비축진정비사업 용자금 지원**(주택정책실 공공관리과 소관)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재정비축진정비사업의 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용자수탁기관의 여신심사 강화로 인해 용자가능금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예산현액(247억 7,000만원)의 54.2%, 134억 3,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009, 2010회계연도 연속하여 각각 148억원, 322억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어 발생사유는 상이하나 매년 반복적인 불용사례가 발생하는바 예산을 일시에 편성하기보다는 필요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정책목표가 재정비사업으로 시민의 주거여건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용원인이 서울시에 있지 않다 하여도 당초 사업목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공원녹지국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은 남산자락에 입지한 체육시설(국궁장, 테니스장, 리틀야구장)을 이전하여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나, 이전 신설예정인 리틀야구장부지가 고덕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국토해양부, '11.5.18)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현액(243억 4,800만원)의 50.9%, 121억 9,600만원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은 2010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의 75.9%인 208억 7,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이후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계획 발표(2011.5.18)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감액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운용방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집행가능한 예산을 확보한 결과 121억원이 불용된 것임

○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소관)은 도로확장 구간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지연,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지연 및 사업구간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예산현액(265억 3,000만원)의 46.0%인 121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고

- 이미 지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동 사업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계용역 및 도로확장 공사 발주지연 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예산현액(315억 7,100만원)의 84.0%인 265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 사업주관부서가 관련기관 및 주민과의 업무협의 등 선결요건 등은 소홀히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과욕으로 소요예산만을 우선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산현액의 46.0%, 121억 9,3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검토됨

○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자금 지원**(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소관)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용자금 신청저조로 2011회계연도 추경에서 불용예상액 200억원을 감추경하였음에도 예산현액 100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 동 사업의 불용은 경제여건 변화에 원인이 있겠으나 2011년도 제1회 추경(2011.10.31)이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제출되어 실제 최종 예산으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불용된 100억원도 감추경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사료됨

○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대규모 불용사업의 발생 원인이 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변화, 중앙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주민과의 사전협의 등의 사전절차이행 부족,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기편성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 사업추진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의 예산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미리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 편성된 소요예산을 반드시 감추경하여 서울시의 연간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표 3-26〉 2011회계연도 불용액 발생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298,000	54,323	18.2
복지건강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84,377	34,537	40.9
기후환경본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	207,153	20,336	9.8
경제진흥실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	16,957	15,404	90.8
주택정책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75,715	14,823	5.3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24,770	13,430	54.2
도시안전실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13,516	12,767	94.4
공원녹지국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	24,348	12,196	50.0
도시교통본부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26,530	12,193	45.9
도시계획국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지원	10,000	10,000	100.0

주1)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불용 제외

- 다음으로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예산현액 대비 90.8%, 154억 400만원),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예산현액 대비 5.4%, 148억 2,300만원),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예산현액 대비 45.9%, 121억 9,300만원),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교통개선분담금)**(예산현액 대비 94.5%, 127억 6,700만원),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예산현액 대비 50.1%, 121억 9,600만원)사업은 2010

회계연도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으로 2011회계연도에는 기편성된 예산현액 100억원이상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임

- 지난 2010회계연도의 경우와는 불용액 발생사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예산만 우선 배정받고 집행은 등한시한 결과로 인식될 수 있어 2011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였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표 3-27〉 2011회계연도 불용사업 중 2010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0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경제진흥실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	16,957	16,957	15,404	90.8
주택정책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54,538	275,715	14,823	5.4
주택정책실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26,530	26,530	12,193	45.9
도시안전실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13,285	13,516	12,767	94.5
공원녹지국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	20,875	24,348	12,196	50.1

## ②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011회계연도에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중 17개 사업이 기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업임.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소관 **공공형 보육시설**(예산현액 23억 6,9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외됨에 따라<sup>31)</sup> 서울시 부담분 전액이 불용되었음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소관 **은평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예산현액 22억 2,100만원)은 부지매각대금 문제로 은평구청과 SH 공사간의 소송 및 은평구청의 관련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소관 **에너지제로하우스 운영**(예산현액 3억원)은 최첨단 에너지 절약기술과 신재생 에너지기술이 적용된 친환경건물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시뮬레이션 수행 및 난지매립지 쓰레기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위탁운영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동 사업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를 부족함바, 사업추진 의욕을 앞세우기보다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재정현실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주관부서의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사료됨
- **서울글로벌패밀리 홈스테이 운영**(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소관)은 당초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려던 방식에서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간접 지원방식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함으로써 사업비 예산현액 1억 8,500만

31) 관련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침시달(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659, 2011. 5.19)

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서부여성발전센터 이전 건립 추진**(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소관)은 서부여성발전센터 이전 건립 시기가 2013년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설계비 예산현액 1억원 전액 불용되었으며, **서울시 친환경 서비스 인증시스템 구축**(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소관)은 동일한 사업인 환경부의 ‘서비스부분 환경표시제도’<sup>32)</sup>가 시행(‘11. 1) 됨에 따라 사업비 예산현액 6,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 동 불용사례의 경우, 사업수행에 앞서 관련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업추진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결국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경우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사전정보 및 소통 부족 등으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한 바 서울시가 추진한 해당사업의 예산전액 불용된 것으로
- 향후 관련당사자간에 사업계획 수립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호텔서비스 분야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1. 1월부터 시행중임



〈표 3-28〉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자금 지원	10,000	10,000	100.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공공형 보육시설	2,369	2,369	100.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은평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2,221	2,221	1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제로하우스 운영	300	300	1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서울 글로벌패밀리 홈스테이 운영	185	185	1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부여성발전센터 이전 건립 추진	100	100	1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친환경 서비스 인증시스템 구축	60	60	10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컨벤션 인프라 확충	53	53	100.0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전통시장 우수 농축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45	45	1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안내 유선방송 유지보수	36	36	100.0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5	35	100.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3	23	100.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찾아가는 학교상담서비스	15	15	100.0

○ 그 외에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소관 **컨벤션 인프라 확충**(예산현액 5,300만원)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부족으로 예산현액 전액 불용되었고,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우수 농축산물 공급시스템**(예산현액 4,500만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수농산물 점포개설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현액 전액 불용되었으며, 여성가족정

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예산현액 2,300만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중복편성되어 예산현액 전액 불용되었고,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찾아가는 학교 상담서비스**(예산현액 1,500만원)는 국고보조사업의 폐지로 예산현액 전액 불용되었으며,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한강공원 안내 유선 방송 유지보수**(예산현액 3,600만원)와 **한강공원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예산현액 3,500만원) 등도 실제 유지보수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현액 전액 불용된 바

- 서울시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불용사유를 보다 명확히 소명하고 불용발생 사유가 사업주관부서에 있을 경우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은 아닌지 예산편성과정에 대하여 조사하여 유사편성사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

- 향후 예산편성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사업의 중복 추진여부를 조사하는 등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기편성된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발생한 실·국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조치를 해야 할 것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9,010억 7,800만원)의 8.2%, 740억 900만원이 불용된 바 최근 5년간 불용액 발생추이를 고려할 때 불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29〉 상수도사업본부 불용액 발생규모(2011~2007)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011	901,078	74,009	8.2
2010	898,083	75,397	8.4
2009	1,060,742	75,913	7.2
2008	948,488	122,470	12.9
2007	853,476	115,730	13.6

- 2011회계연도까지 최근 5년간 불용액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매 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중 '07회계연도 510억 2,600만원, '08회계연도 693억 7,900만원, '09회계연도 204억 8,800만원, '10회계연도 264억 4,400만원 '11회계연도 174억 8,500만원이 예산절감을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제출하였음
-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성격상 매년 유사한 시설사업을 반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을 발굴한 결과로 만족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수시로 발굴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표 3-30〉 상수도사업본부 불용액 발생사유(2011~2007)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사업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비비 잔액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
2011	901,078	74,009	2,387	652	17,485	7,976	9,007	36,499
		(100.0)	(3.2)	(0.9)	(23.6)	(10.8)	(12.2)	(49.3)
2010	898,083	75,397	4,066	953	26,444	5,363	21,632	16,936
		(100.0)	(5.4)	(1.3)	(35.1)	(7.1)	(28.7)	(22.5)
2009	1,060,742	75,913	1,383	1,130	20,488	10,258	25,324	17,328
		(100.0)	(1.8)	(1.5)	(27.0)	(13.5)	(33.4)	(22.8)
2008	948,488	122,470	860	1,434	69,378	5,853	18,411	26,530
		(100.0)	(0.7)	(1.2)	(56.6)	(4.8)	(15.0)	(21.7)
2007	853,476	115,730	10,797	10,139	51,025	5,652	15,310	22,803
		(100.0)	(9.3)	(8.8)	(44.1)	(4.9)	(13.2)	(19.7)

- 불용액의 경우,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예측되지 못한 재정환경의 변화나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편성된 예산중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불용액을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결부시켜서는 아니 될 것임
  
- 다만, 수년간 실물경기가 위축되어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 1원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실·국이 사업계획을 정밀히 수립하고, 사전절차 등이 반드시 완비된 후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준수되어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2) 예산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②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는 것으로
- 2011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에서 디자인기획과로 5건, 52억 1,9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택본부 재정비과에서 공공관리과로 247억 7,000만원이 이체되는 등 총 15건, 859억 5,1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음

〈표 3-31〉 이체 발생 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2011	합 계	20	91,170	△91,170
	• 일반회계	5	5,219	△5,219
	• 특별회계	15	85,951	△85,951
2010	합 계	510	980,024	△980,024
	• 일반회계	426	612,363	△612,363
	• 특별회계	84	367,661	△367,661
2009	합 계	153	92,172	△92,172
	• 일반회계	148	72,063	△72,063
	• 특별회계	5	20,109	△20,109

### (3) 예산 이용 및 전용 관련

#### ① 이용 관련

- 2011회계연도의 경우, 총 17건, 1,136억 1,200만원의 “예산이용”이 발생하였음

〈표 3-32〉 3년간 이용 발생 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회 계 별 (발생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11	합 계 (17)	113,612	△113,612	
	• 일반회계 (17)	113,612	△113,61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 특별회계 -	-	-	
2010	합 계 (118)	79,141	△79,141	
	• 일반회계 (117)	42,513	△42,513	인건비부족분 총당
	• 특별회계 (1)	36,628	△36,628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 부족분 총당
2009	합 계 (184)	10,983	△10,983	
	• 일반회계 (181)	10,564	△10,564	인건비 부족분 총당
	• 특별회계 (3)	419	△419	인건비 부족분 총당

- 서울시 결산상 예산 이용의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이용금액의 비율은 매우 낮으나 거의 대부분 인건비 예산 마련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연도말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을 위해 10건(26억 1,200만원)의 이용이 있었음
- 또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제1심 판결('11.11.17)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4,940명에 대한 1,310억원의 수당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소요예산 200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마련하고 현직공무원에 대한 소요예산 1,110억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타 정책사업내 사업예산에서 예산총칙 제8조33)에 따라 이용한 것임

-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이용한 사업예산 대부분이 교육지원예산<sup>34)</sup>으로 보편적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예산이 제때 쓰여지지 못하고 대규모 불용을 야기한 것에 대한 별도의 논의 없이 대규모 지출을 위해 이용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것임

○ 예산의 이용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부합되는 절차라 하여도 예산편성시 예산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회계연도개시 이후 예산이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 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 특히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는 인건비 부족분충당을 위한 이용의 경우 인건비를 회계별, 사업소별로 개별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단위 인건비는 본청 재무부서에 통합 편성<sup>35)</sup>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3) 서울시 예산총칙

2011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	2012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
<p>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p> <p>(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 경비                      (3)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4)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6)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p>	<p>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p> <p>(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 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p>

34) 학습준비물비 지원 52억원, 교육경비지원(조례상전출금) 200억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공립초고)502억원 등 755억원

35) 2012년도의 경우 재무국에 인력운영비(8,299억원)를 통합편성 하였음



② 전용 관련

○ '11회계연도의 경우, 전용된 예산은 총 171건, 398억 6,700만원으로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255억 2,500만원 감소하였음.<sup>36)</sup>

〈표 3-33〉 2011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0		전년대비 증 감 액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전용액	건 수	전용액		
합 계	171	39,867	283	65,392	△25,525	△39.0
일반회계	137	38,743	250	62,197	△23,454	△37.7
특별회계	34	1,124	33	3,195	△2,071	△64.8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제외

※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용은 17건, 11,690백만원임

〈표 3-34〉 실·본부·국별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전용액		전용건수
계	39,867	(100.0)	171
교육협력국	18,491	46.4	2
복지건강실	7,325	18.4	38
여성가족정책실	2,704	6.8	1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238	5.6	22
경제진흥실	2,154	5.4	9
도시안전실	1,233	3.1	14
재무국	1,225	3.1	2
기후환경본부	859	2.2	2
주택정책실	761	1.9	5
공원녹지국	545	1.4	6
서울시립대학교	427	1.1	5
도시계획국	363	0.9	4
기획조정실	354	0.9	3
도시교통본부	272	0.7	12
인재개발원	237	0.6	8
한강사업본부	203	0.5	3
교통방송	194	0.5	5
행정국	140	0.4	5
도시기반시설본부	92	0.2	4
의회사무처	22	0.1	3
서울역사박물관	15	0.03	1
비상기획관	12	0.03	2
시민소통기획관	1	0.003	1

주1) ( )는 전체 전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제외

※ 2011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용은 17건, 11,690백만원임

36) 2011회계연도의 경우, 전용된 예산은 총 171건, 398억 6,700만원

-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소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사업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2011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부족액 184억 6,100만원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공립초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전용하였음
  - 물론 무상급식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집행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나
  - 동 전용사례는 2011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 반영된 ‘초등학교 전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 1,300만원을 “불법증액”으로 집행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의 전용을 통해 관련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취지를 무시하고, 예산의 신축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복지건강실 노인복지과 소관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사업은 2011년도 예산심사시 시의회에서는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생계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 차원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의결(예산액 128억 3,400만원)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불법증액”으로 표기하고,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액(100억 5,600만원)을 실집행예산으로 별도 구분하였음
  -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서울시가 예상한 것과 달리 자치구와 민간참여를 통한 급식재원조달이 저조하여 2010년 지원수준(예산액 118억 3,5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어 급식예산부족액 18억 800만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서 전용('11.10.27)한 것인 바

- 동 전용 사례는 의결된 예산액으로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집행부가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의회의 의결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서울시의 당초계획대로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하였고, 불필요한 전용사례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사의결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일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

○ 복지건강실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은

- 보건복지부가 2010년 12월20일 “2011년 경로당 특별난방비”를 확정내시함에 따라 기편성된 시비분담분보다 2억 9,700만원이 부족하였으며
- 지식경제부가 2011년 2월16일 “2011년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계획”을 통보하고, 국고보조금 15억 3,9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서울시 예산부서가 국고보조금을 세입·세출 간주처리('11.5.12)함에 따라 시비분담분을 대응편성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에서 8억 8,300만원을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비분담분을 확보하고,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은 시비분담분 부족액(2억 9,700만원)과 변경으로 감액된 예산(8억 8,300만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sup>37)</sup>으로부터 11억 8,000만원 전용('11.10.24)한 것임

3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의 사업내용중 재가급여예산을 자치구가 분담(19.65%)하도록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공포('11.7.28)됨에 따라 당초 편성예산(796억 3,000만원)중 집행잔액 발생예상분 29억 8,800만원을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에 11억 8,000만원을 전용하고, 저소득노인급식제공(자치단체경상보조)에 18억 800만원을 전용함

〈표 3-35〉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예산변경 및 전용

(단위 : 백만원, %)

시기	사업명	변경전 예산현액	감	증	변경후 예산현액	비고
5.26.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097	△883		7,214	예산변경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	1,539		883	2,422	
1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79,631	△1,180		78,451	전 용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7,214		1,180	8,394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은 시장방침<sup>38)</sup>으로 동절기 저소득틈새계층의 난방문제를 지원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8억원을 전용하였으며<sup>39)</sup>

〈표 3-36〉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예산과목)	감	증	비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		집행잔액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00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소관 **거리노숙인 보호**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2011.8.22자로 시행됨에 따라 거리노숙인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시설 입소를 꺼리는 알콜중독·만성 거리노숙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드롭인 센터 개념의 거리노숙인

38) 서민이 따뜻한 겨울추진대책 (시장방침-227, '11.11. 4)

39) 희망온돌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예산전용·변경계획 (복지정책과-124080, '11.12. 3)

자유카페의 설치·운영을 위해 예비비 3억 1,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예정건물 인근 상점 등의 민원재기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숙인쉼터운영**(사회복지보조)에서 전용하였으며

〈표 3-37〉 거리노숙인 자유카페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전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노숙인 쉼터운영	사회복지보조	7,136	△253		거리노숙인 자유카페 설치 운영
거리노숙인보호	민간자본보조	-		100	
	민간위탁금	2,997		3	
	민간대행사업비	194		150	

- 혹서기 거리노숙인 보호 및 감소 대책 추진을 위해 응급 구호방 운영 기한 연장 및 임시주거지원, 거리 상담원 증원등을 위해 **노숙인쉼터 운영사업** 및 **재활쉼터 운영 사업**에서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으로 전용하였음

〈표 3-38〉 거리노숙인 보호을 위한 예산전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사유
노숙인쉼터운영	사회복지보조	6,429	△10		임시주거지원 및 응급구호방 운영
재활쉼터운영	민간위탁금	2,306	△43		
거리노숙인보호	민간위탁금	3,000		53	
재활쉼터운영	민간위탁금	2,263	△56		
거리노숙인보호	사회복지보조	1,604		56	

- 당초 노숙인 일자리지원계획을 월평균 1,081명 규모에서 서울역 거리노숙인 보호 및 감소대책 추진을 위해 월평균 지원인원을 1,270명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노숙인쉼터운영사업**에서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7억 2,500만원을 전용하였음

〈표 3-39〉 노숙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전용

(단위 : 백만원, %)

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사유
노숙인쉼터운영	민간위탁금	2,870	△271		노숙인일자리 사업 지원확대
	사회복지보조	6,883	△454		
노숙인일자리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5,734		725	

- 동 전용 사례는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의 취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나 불용액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복지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할 경우 예산이 감액조정된 사업의 정책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전용에 앞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산대책담당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사업은 부족예산 10억 4,100만원을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사업에서 전용('11.12. 8)하였고,40)
- 도시안전실 도로행정과 소관 **지하도상가개보수** 사업은 부족예산을 동 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중 8억 8,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11.12. 7)한 바41)

4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사업의 경우, 한부모가족자녀 지원대상가구가 2010년도 19,773가구에서 2011년도 21,756가구로 1,983가구 증가하여 소요예산부족을 해소하고자 다자녀가족영유아 지원신청이 월29,000명에서 24,000명으로 감소하여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현액 182억 8,800만원중 10억 4,100만원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사업으로 전용('11.12. 8)한 것임

41) 지하도상가개보수 사업은 시장지시('11. 2.24)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 개보수공사 착공지연에 따른 청소용역비 증가 등으로 민간위탁금중 관리비 부족액이 발생한 바 지하도상가 입찰방법을 '편의시설 설치조건부'로 개선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된 민간대행사업비중 8억 8,600만원을 민간위탁비로 전용('11.12. 7)함

- 이는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사업내 통계목간 예산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전용을 신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사료됨
- 경제진흥실 창업소상공인과 소관 **장년층창업지원** 사업은 당초 장년창업센터 리모델링공사비 10억원을 민간위탁금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금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연말에 통보되어<sup>42)</sup> 장년창업센터 리모델링공사비 10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11. 5. 4)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 예산확정후 정부방침이 통보되는 등 당초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부득이하게 발생하여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전용을 통하여 예산과부족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설치로 민간자본보조 예산 10억원이 부족하여 **여성발전센터 운영**<sup>43)</sup> 사업의 민간위탁금중 10억원을 전용('11. 8.23)한 바
  - 소요예산중 10억원을 감액조정한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 중부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위한 임차료를 부족편성하여 2011년 8월 중부창업보육센터 설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편성오류로 인하여 발생될 불용예상액 10억원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부족분으로 전용('11. 8.23)한 것으로 사료됨

42) 행정안전부예규-제341호('10.12.24)

43) 여성발전센터 운영사업은 중부창업보육센터 설치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기편성된 민간위탁금 67억 3,600만원중 불용이 예상된 10억원을 전용한 것임

- 또한 주택정책실 한옥문화과 소관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의 경우, 한옥 개보수융자금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동 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중 6억 4,2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용('11. 9.19)한 것인바 2010년 6월 경북궁 서측 668가구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추가지정됨에 따라 한옥개보수융자금 신청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민간융자금을 부족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세부사업내 통계목인 민간대행사업비중 6억 4,2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예산부족편성문제를 예산전용으로 희석시킨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에서 발생된 전용절차는 문제가 없으나 예산전용이 예산 집행에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 하여도 예산편성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예산과다편성 또는 부족편성을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오용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동 전용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11회계연도의 경우, 전용액(398억 6,700만원)<sup>44)</sup>중 회계연도종료가 인접한 10월부터 12월까지 전용액의 81.7%, 324억 4,000만원이 전용된 바 예산전용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성을 부여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집행부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이나 불용액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편의적인 방법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44)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제외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 집행부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것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법테두리 안에서 회피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전용, 이용, 이체 등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sup>45)</sup>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임

---

45)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4항 및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4항에 의하면 전용, 이용, 이체 의 경우 분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와 예결특위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표 3-40〉 주요 전용 현황 (전용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당초 예산액	전용액		전용 승인일	전용사유
			감	증		
교육협력국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공립초교)	69,513	18,461		11.01	초등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예산 전용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공립초교)			18,461		
복지건강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78,451	1,808		10.27	급식 부족예산확보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2,835		1,808		
복지건강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79,631	1,180		10.24	사업 변경으로 발생한 부족분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7,214		1,180		
여성가족정책실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	18,286	1,041		12. 8	한부모가족자녀교통비 학용품비 예산부족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5,818		1,04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발전센터 운영	6,737	1,000		8.23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 설치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2,205		1,000		
경제진흥실	장년층 창업지원	2,000	1,000		5. 4	장년창업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장년층 창업지원			1,000		
도시안전실	지하도상가 개보수	4,964	886		12. 7	개보수공사에 따른 관리비 부족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4,943		886		
복지건강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6,364	800		12. 4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저소득틈새계층특별 지원	12,180		800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양천,노원,강남,마포)	9,044	770		11.29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
	강남환경지원센터 건립	1,760		770		
주택정책실	북촌마을 가꾸기	7,269	642		9.19	한옥 개보수용자금 지원요청 증가
	북촌마을 가꾸기	200		642		
복지건강실	노인Day-Care센터 설치	3,000	600		9.23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확보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0,672		600		

(4) 명시이월 관련

- 2011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sup>46)</sup>에 근거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여 의결한 것으로<sup>47)</sup> 명시이월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37건(통계목 기준), 1,493억 3,600만원 증가한 39건(통계목 기준), 1,533억 5,300만원임
- 2010회계연도(5건, 40억 1,700만원)에 이어서 2011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이 증가된 것은 소관 실·국이 기편성된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명시이월 발생사례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3-41〉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명시이월		이월률 (%)
			건수	금액	
2011	계	21,883,150	39	153,353	0.7
	일반회계	14,980,631	16	21,154	0.1
	특별회계	6,902,519	23	132,199	1.9
2010	계	22,515,390	5	4,017	0.02
	일반회계	15,902,400	5	4,017	0.03
	특별회계	6,612,990	0	0	0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10개), 공기업특별회계(2개) 포함

4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7) 명시이월의 경우,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99회계연도 3건, 43억 8800만원, '00회계연도 2건 23억 9,200만원, '02회계연도 7건, 1,841억 2,500만원 발생한 사례가 있음.

- 특히,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인 바
  - 집행부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고이월보다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명시이월의 발생사유가 대부분 협의지연,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자칫 사업주관부서가 실제로는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을 통하여 관련예산을 다음연도까지 연장시킴으로써 언제든지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포장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명시이월이 의회에 요청될 경우,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전용수련원 건립**의 경우, 지난 2010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소요예산중 35억 9,10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고, 2011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42억 7,400만원)의 10.6%인 6억 8,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78.6%, 33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바
  - 최근까지 강원도 양양군과 “하조대 희망들”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어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나<sup>48)</sup> 2007년 제1회 추경으로 소요예산이 편성된 이후 향후 발생가능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검토

48) 동 사업과 관련된 1심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2012. 6. 5)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후 사업을 재개할 계획임

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을 경우,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수년간 반복되는 사례를 최소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 지난 2011년 10월,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28건(통계목 기준), 1,522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별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 사업계획변경 및 관련자간 협의지연 등으로 회계연도내 예산집행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출납폐쇄후 사고이월 시키기 보다는 추경 등을 통하여 사전에 명시이월 요청함으로써 사업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5) 사고이월 관련

- 2011회계연도 사고이월 금액은 예산현액 대비 1.2%, 2,605억 3,400만원으로 지난 '10회계연도보다 6,186억 8,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2008회계연도 이후 사고이월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그동안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 문제와 더불어 1조원에 근접한 사고이월 발생규모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2011회계연도에 큰 폭으로 감소된 사고이월률은 집행부가 세출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사업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사료됨
- 다만, 2011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39건(통계목 기준), 1,533억 5,3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승인 받은 바 있어 금번 결산안에 제출된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감소된 측면이 있음

〈표 3-42〉 사고이월 현황(2011~2008)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사고이월		이월률
			건수	금액	
2011	계	21,883,150	376	260,534	1.2
	일반회계	14,980,631	142	53,649	0.4
	특별회계	6,902,519	234	206,885	3.0
2010	계	22,515,390	632	879,219	3.9
	일반회계	15,902,400	280	345,252	2.2
	특별회계	6,612,990	352	533,967	8.1
2009	계	25,338,774	730	929,491	3.7
	일반회계	17,465,623	357	288,283	1.6
	특별회계	7,873,151	373	641,208	8.1
2008	계	21,841,177	987	1,184,968	5.4
	일반회계	14,815,041	466	394,556	2.7
	특별회계	7,026,136	521	790,412	11.2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10개), 공기업특별회계(2개) 포함

〈표 3-43〉 사고이월 발생사유(2011~20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구분	계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기타
2011	계	260,535 (100.0)	31,408 (12.1)	49,928 (19.2)	51,726 (19.9)	33,952 (13.0)	29,811 (11.4)	4,259 (1.6)	59,451 (22.8)
	서울시	213,607	19,708	49,928	32,283	26,043	27,665	4,259	53,721
	상수도	46,928	11,700	-	19,443	7,909	2,146	-	5,730
2010	계	879,220 (100.0)	135,292 (15.4)	148,160 (16.9)	308,396 (35.1)	68,831 (7.8)	146,823 (16.7)	4,971 (0.6)	66,747 (7.6)
	서울시	821,141	132,136	148,160	301,516	64,173	146,823	4,971	23,362
	상수도	58,079	3,155	-	6,880	4,658	-	-	43,385
2009	계	929,491 (100.0)	116,294 (12.5)	106,279 (11.4)	368,811 (39.7)	93,518 (10.1)	113,765 (12.2)	5,611 (0.6)	125,213 (13.5)
	서울시	832,408	93,989	106,279	358,258	93,399	113,765	5,611	61,107
	상수도	97,083	22,305	-	10,553	119	-	-	64,106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분류할 경우, 전체 사고 이월액의 19.9%인 517억 2,600만원이 **사전절차지연**(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바 만일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앞서 보다 철저히 준비하였다면 절차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①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소관)**은 남부순환로 서부트럭터미널 앞 구간에 연장 1,075m 규모의 지하차도를 2013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지

하차도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와 감리가 지연되어 1억2,600 만원을 사고이월한데 이어, 2011회계연도에도 폐기물처리업체 부도에 따른 재선정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49억 9,600 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업중 **광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는 하도급업체의 파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현액(341억 7,400만원)대비 36.7%인 125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이미 직전 회계연도에도 설계변경 등으로 시설비중 일부가 사고이월된 선례가 있음

- 물론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사고이월은 공사중 장애요인에 해당하여 직전 회계연도와 사고이월발생사유가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하나 사고이월이 발생함으로써 공사가 지체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고이월 발생률을 더욱 감소시켜야 할 것임

-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암정수장 외에도 암사, 영등포, 강북, 구의, 뚝도 정수센터 등에서도 동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유사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개별사례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상호교류하여 기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②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은 총 사업비 9,298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우이동과 신설동간 11.4km(정거장 13개소) 연장의 지하경전철을 2009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관련규정 개정에 의거 정거장 규모조정 등 재설계로 인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연과 보상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시간 부족으로 인해 보상비 181억원을 명시 이월하고 있으며,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46억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음
- 이미 2009회계연도에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지연에 따라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기간 부족을 사유로 521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으며, 2010회계연도에서도 정거장 규모조정 등 재설계로 인한 공정변경으로 557억 6,900만원이 불용된 바 있고, 2011회계연도에서도 위와 같이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바 대규모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동 사업은 기존 도시철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취약한 서울 동북부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국비, 시비, 민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보다 치밀한 공정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표 3-44〉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연도별 집행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2009년	144,320	144,748	9,413	-	52,198	83,137
2010년	79,769	131,966	74,198	-	-	57,769
2011년	83,909	83,909	60,967	18,088	4,644	209

○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소관사업중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건설(암사대교건설)** 사업은 '12년 2월 하남~미사간 광역도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어 2011년도에는 보상협의를 진행될 수 없어 예산현액(709억 4,500만원)의 27.0%, 191억 6,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지난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불용 100억 1,100만원, 사고이월 169억 4,400만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바

- 사업주관부서인 도시안전실이 동 사업이 회계연도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2011년도 제1회 추경시 명시이월을 요청하였다면,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해소시킬 시간적 여지를 마련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이월로 인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둔감해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예산확보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이를 조사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네뒷산 공원 조성(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소관)**은 당초 봉화산근린공원 등 26개소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보상협의를 지연되었고 동절기로 인해 수목공사가 지연됨으로써 9개 공원만 조성한 후 시설비 예

산현액(403억 9,200만원)의 15.2%, 61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음

- 이미 2009회계연도에 수용재결 및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약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예산현액(771억 4,800만원)의 14.6%, 112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③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소관) 사업의 경우, 선례가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해외사례 수집, 사업대상지 및 숲체험장 모델선정 등의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시설비 등 예산현액(21억원)의 81.5%, 17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이나

- 동 사업은 이미 지난 2011회계연도 예산심사시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유아숲체험장 조성을 위한 투자심사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높은 불용률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으며, 결국 사전심의 절차에서 타당성심사와 사업대상지 및 모델지 선정 등을 지적되었더라면 금번과 같은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 향후에는 선례가 없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편성요청하였을 경우, 예산총괄부서가 소요예산을 감액편성하는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시범사업 후 그 운영경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집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송배수관 정비사업(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소관)**은 길음교~정릉2가압장간 송배수관정비공사를 비롯한 28개의 단위발주공사로 12개 공사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sup>49)</sup>

- 동 사업의 기술용역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11. 5. 4)됨에 따라 협약체결 등이 지연되었으며 계약심사 발주방법과 관련하여 조달청 및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이 지연되는 등 시설비 예산현액 626억 6,200만원의 17.8%인 111억 2,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소관 사업중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는 15.1km의 도수관로를 부설하기 위해 남양주시와 도로확장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09. 6.22)한 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지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예산현액(468억 4,700만원)의 9.6%인 45억원(시설비 등)이 사고이월 된 것임

---

49) ①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②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 임시전기공사, ③ 보광배수지~한남동빗물펌프장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비굴착갱생), ④ 갈현동길외 1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⑤ 불광천~증산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⑥ 합정동로터리~마포구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⑦ 자양로 송배수관 정비공사, ⑧ 창동746~703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⑨ 신길동 8-50~1128번지간 상수도관 정비공사, ⑩ 신길동 8-50~17-48번지간 상수도관 정비공사, ⑪ 가락시장사거리~문정지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교통대책 수립용역, ⑫ 송배수관 정비사업 자재 구매

#### ④ **유관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업중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는 당초 하절기(5~6월)에 선행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하절기 급수대책이 시행되어 선행공사가 연기되어 본공사 또한 지연됨으로써 시설비 예산현액(227억 3,300만원)대비 14.5%인 32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소관)은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의 공정률이 부진(80%미달)하여 미지급된 중도금 등 예산현액(2,757억 1,500만원)의 7.6%, 209억 8,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사유는 다르나 지난 2010회계연도에도 국고보조금의 불용방지를 위하여 예산현액(2,404억 5,2300만원)의 22.7%, 545억 3,800만원을 불용한 바 있고, 2009회계연도에도 임대주택매입비 불용을 막기 위하여 예산현액(5,025억 5,300만원)의 2.3%인 115억 8,100만원이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음
  - 다만, 동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고, 주된 원인 또한 재개발구역의 공정률 미달로 인한 것이나 동 사업의 취지가 재개발구역 내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소관)은 총 사업비 2,348억 1,800만원으로 지상4층과 지하4층의 본관동과 지상13층과 지하5층의 신관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티갤러리 정책방향을 잠정적으로 보류함에 따라 공사비 예산현액(563억 5,700만원)의 22.8%, 132억 7,800만원을 사고이월된 것임
  - 동 공사의 경우, 이미 2010회계연도에는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예산현액(390억 3,000만원)의 66.4%, 259억 1,9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
  - 다만, 동 공사는 2012년 9월 이후 신청사 입주가 예정되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을 검토하는 것이 시의성이 낮을 수도 있으나 향후 서울시가 행정목적의 건물을 조성할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월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푸른수목원(구로) 조성**<sup>50)</sup>(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소관)은 당초 수목원 조성계획을 변경('11. 7. 5)하여 수목원내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사업설계를 변경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비 예산현액(132억 5,200만원)의 26.6%, 35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50) 동 사업은 2003년도부터 구로구 향동 81-1번지 일대 100,809㎡ 규모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8억 5,000백만원(국비 50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2013년 5월 개원할 예정임

- 동 사업은 당초 2012년 개원을 목표로 2003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해당 시설의 위치가 부지매입 등 선결요건이 해소되어야만 조성될 수 있어 당초 제시된 공기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주관부서가 당초보다 사업이 지체된 동 사업에 캠핑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일반적인 시설공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기연장과 소요예산증가라는 상식적 판단조차 소홀리한 행태로 사료됨
  - 더욱이 공기연장과 직결되는 계획변경에 앞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익도 없이 사업계획만 수차례 변경하여 주민과 갈등요인을 발생시키고, 사업기간도 불필요하게 연장시킨 사례로 판단됨
  - 동 수목원 조성사례에서 발생한 공기연장요인, 사업주관부서의 일관된 행정의 필요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중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공기 또한 연장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예산을 편성요청하기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 기편성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를 절대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의 경우, 지난 2010회계연도에도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된<sup>51)</sup> 사업이나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또다시 기편성된 예산중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한 바
  - 이는 사업주관부서가 사고이월을 당해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실제 지출하지 못한 현황 정도로만 인식할 뿐 사고이월이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바 동일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sup>52)</sup>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출하게 하여 사고이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시킴으로써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51) 2010회계연도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은 446억원 (예산현액대비 45.8%),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은 174억원 (예산현액대비 15.9%),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은 335억원 (예산현액대비 57.2%)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5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디자인파크부)은 예산현액(740억 6,300만원)대비 30.1%, 222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은 예산현액(761억 7,700만원)대비 5.6%, 44억 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예산현액(1,118억 6,400만원)대비 5.0%, 56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표 3-45〉 주요 사고이월 현황(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74,063	51,573	22,290	30.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75,715	239,908	20,984	7.6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사기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70,945	44,189	19,163	27.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매력있는 신청사 건립	58,331	45,046	13,279	22.8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광암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34,174	21,496	12,530	36.7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송배수관 정비사업	62,662	30,669	11,127	17.8
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동네뒷산 공원 조성	40,392	33,224	6,152	15.2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11,864	106,240	5,623	5.0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위례성길 ~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9,256	13,723	5,512	28.6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5,126	20,102	4,995	19.9
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	20,223	13,340	4,660	23.0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83,909	60,967	4,644	5.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22,958	18,380	4,578	19.9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구의 및 자양취수장이전건설공사	46,847	36,067	4,500	9.6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79,225	74,790	4,408	5.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13,482	8,007	3,634	27.0
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푸른수목원(구로) 조성	13,252	9,606	3,526	26.6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수련원 건립	4,275	0	3,360	78.6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통일·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교통개선분담금)	11,029	6,987	3,342	30.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44,870	41,547	3,323	7.4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	22,733	19,407	3,295	14.5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관악산 저류조 설치	3,350	0	3,241	96.7

(6)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시비 혹은 필요에 따라 자치구비 등을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인 바
  - 2011회계연도에는 국고보조금이 2조 702억 4,200만원 내시되었으나 2조 338억 7,600만원이 실제 수령되어 당초예산액보다 363억 6,600만원이 부족수령 되었고, 실제 수령된 예산중 97.4%, 1조 9,81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표 3-46〉 201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집행비율
계	2,070,242	2,033,876	1,981,170	97.4
일반회계	1,469,585	1,434,425	1,407,138	98.1
특별회계	600,657	599,451	574,032	95.8
도시철도	48,550	48,550	48,550	100.0
교통사업	18,897	18,754	16,158	86.2
광역교통	33,800	33,800	13,671	40.4
주택사업	127,254	127,254	127,254	100.0
도시개발	30,830	30,825	29,549	95.9
의료급여	329,374	329,374	328,685	99.8
한강수질	11,952	10,894	10,165	93.3

-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 사이에 363억 6,600만원<sup>53)</sup>의 부족수령액이 발생하였으나 과거 부족수령액 발생비율을 고려할 때 2011회계연도의 부족수령액은 직전 회계연도와 유사한 규모로 사료됨

53) 국비내시액 대비 부족수령액비율은 1.8%임

- 다만,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예산의 변경이나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거나 중앙정부에서 국회의결전 내시하고, 실제 국고보조금을 적게 교부하고 있는 바
- 이미 국고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시비의 집행잔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향후 국비의 실수령액에 따라 기편성된 시비규모를 추경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7〉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2011	계	2,070,242	2,033,876	36,366 (1.8)	1,981,170 (97.4)
	일반회계	1,469,585	1,434,425	35,160 (2.5)	1,407,138 (98.1)
	특별회계	600,657	599,451	1,206 (0.2)	574,032 (95.8)
2010	계	2,083,749	2,044,286	39,463 (1.9)	1,916,214 (93.7)
	일반회계	1,451,089	1,422,514	28,575 (2.0)	1,403,493 (98.7)
	특별회계	632,660	621,772	10,888 (1.7)	512,721 (82.5)
2009	계	2,285,482	2,214,163	71,319 (3.1)	2,114,325 (95.5)
	일반회계	1,570,262	1,517,447	52,815 (3.4)	1,481,888 (97.7)
	특별회계	715,220	696,716	18,504 (2.6)	632,437 (90.8)

〈표 3-48〉 국비 부족수령 주요사업 현황 (부족수령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①	수령액 ②	부족 수령액 ③=①-②	부족수령 비율 ③/①
1	복지건강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32,965	19,458	13,507	41.0
2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32,876	29,366	3,510	10.7
3	복지건강실	희망키움통장	4,078	1,512	2,566	62.9
4	기후환경본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9,289	7,989	1,300	14.0
5	복지건강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825	9,791	1,034	9.6
6	기후환경본부	은평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1,025	0	1,025	100.0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	2,000	1,000	1,000	50.0
8	여성가족정책실	공공형 보육시설	884	0	884	100.0
9	복지건강실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902	292	610	67.6

※ 복지건강실 소관 사업중 기초노령연금 지급,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 생계급여 등의 사업은 국비 내시액과 부족수령액이 5억원이상 발생하였으나 국비내시액대비 부족수령액 발생비율이 5% 미만 임

-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국비내시액 3,611억 8,100만원중 3,591억 4,100만원을 실수령하여 부족수령비율은 국비내시액대비 0.6%, 20억 4,000만원 임
- 자활근로사업(보조사업)은 국비내시액 375억 7,900만원중 358억 400만원을 실수령하여 부족수령비율은 국비내시액대비 4.7%, 17억 7,500만원 임
- 생계급여국비내시액 2,823억 8,500만원중 2,816억 4,400만원을 실수령하여 부족수령비율은 국비내시액대비 0.3%, 7억 4,100만원 임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당초 내시액(329억 6,500만원)중 194억 5,800만원만 교부되고 135억 700만원이 적게 교부된 바

-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종료('11.10.31)하고, '11년 10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시

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의 종료로 국비 7억 9,900만원이 감내시 되었고<sup>54)</sup>

- 기존 사업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로 국비 127억 800만원을 예산변경(분리)함으로써 예산편성당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의 국비내시액보다 127억 800만원이 감소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국비가 부족수령된 것은 아님<sup>55)</sup>
- 다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사업의 종료통보('11. 9.16)로 국비의 감내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11년 10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어 편성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서 국비 127억 800만원을 지난 2011년도 제1회 추경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서 반드시 감액 조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소관)은 당초 내시액(328억 7,600만원)중 293억 6,600만원이 교부되고 35억 1,000만원이 적게 교부된 바 동 사업은 이미 수년전부터 계속되어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경유차중 매연저감장치 설치 차량수가 증가되었고, 차량 출고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됨으로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하는 차량이 감소함으로써 국비신청액도 당초 내시된 국비보조금보다 35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임

5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046(2011. 9.16) 서울 △799백만원, 울산 △197백만원 제주 △177백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부산 747백만원, 인천 354백만원, 대전 146백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음

55)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당초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내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국비 127억 800만원을 교부함에 따라 7차 간주처리를 통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을 편성하고 당초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내에 매칭편성되어 있던 시비를 예산변경하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비부담금 112억 800만원을 확보한 것임

○ **희망키움통장**(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소관)사업은 당초 내시액(40억 7,800만원)중 15억 1,200만원이 교부되고 25억 6,600만원이 적게 교부된 바 이는 서울시가 '09년 1월부터 서울형복지의 일환으로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탈 수급에 성공하는 경우에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취업수급자층의 신청률이 저조(당초목표대비 44.95%)하여 국비가 감내시 된 것이라고 하나

- 수급자 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탈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고의 감내시가 확정된 경우라면 2011회계연도 제1차 추경시 감추경을 통하여 매칭편성된 시비를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표 3-49〉 희망플러스 통장과 희망키움 통장의 비교

구 분	희망플러스통장 (서울시)	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
개 요	• 근로 빈곤층의 근로소득 저축액에 동일금액을 적립 지원	• 일반취업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및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지원
시행시기	• 2009. 1월	• 2010. 2월
대상기준	•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자	• 취업 수급자가 있는 가구주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매칭금 지원조건	• 없음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부 지원
저축기간	• 3년	• 3년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민간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민간매칭금
재원분담	• 시비 50% : 민간기부금 50%	• 국·시·구비 차등보조
총적립금	• 수급자 : 최대 720만원 + 이자 • 차상위등: 최대 1,440만원 + 이자	• 4인가족 최대 2,880만원 + 이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소관) 사업은 당초

내시액(92억 8,900만원)중 79억 8,900만원이 교부되고 13억원이 적게 교부된 바 예산편성당시 CNG청소차 보급물량이 87대에서 48대로 감소하였고, CNG마을버스 경우에도 당초 150대에서 100대로 감소함에 따라 국비도 13억원이 감소된 것임

-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 희망키움통장,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등은 당초 내시된 국비보다 실제 교부된 국비가 축소교부된 것으로 회계연도내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국비를 당초보다 감액하여 교부요청함으로써 국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된 것이나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체감하여 추경 등을 통하여 해당사업에 매칭된 시비를 감액조정 하였다면 한정된 서울시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정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한 사례로 판단됨
- **은평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소관)은 은평구청(103억원)과 SH공사(192억원)간 건립부지 매각감정가액에 대한 견해차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은평구청이 사업취소를 결정('10.11.26)함에 따라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됨으로써 당초내시된 국비 10억 2,500만원 전액을 교부받지 않은 것이나

- 은평구청의 사업취소('10.11.26), 시공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해지통보('11. 2.28), 감사원감사('11.11. 2~12.15) 등 사업 지연 및 취소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국비와 매칭되어 편성된 시비를 추경으로 감액조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기편성된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바 감추경을 요청하지 않아 한정된 서울시의 세출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소관) 사업은 문화부가 당초 국비20억원을 가내시하였으나 2011년도 서울시예산이 확정된 이후 2011년 3월 동 사업에 대한 국비교부액을 10억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예산편성당시의 당초예산액보다 실수령액이 10억원 축소교부된 것인바

- 동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국비의 감액교부로 예산액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추경을 통하여 실제교부된 국비와 대응편성된 시비를 감액 조정했어야 함에도 행정편의가 우선고려됨으로써 감추경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공공형 보육시설**(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소관)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당초 국비 8억 8,400만원을 가내시하였으나 '11년 1월 국고보조금 7억 9,100만원만 확정내시하고,<sup>56)</sup>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배정 물량”에서 서울시를 제외함으로써<sup>57)</sup> 내시된 국비 전액을 교부하지 않은 것인 바

56)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87 (2011. 1.10)

57)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659 (2011. 5.19)



- 사업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측면은 있으나 서울시에 5,684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이중 국공립시설도 626개소에 이르고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에서 서울시가 배제된 사유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비와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바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09회계연도, '10회계연도 연속으로 대규모 결손을 나타냈으나 2011회계연도에는 6,273억원 규모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표 3-50〉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2011~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합계	6,273	543	△706	11,254	19,269	24,289
일반회계	1,028	△3,129	△2,144	4,431	11,376	14,450
특별회계	5,245	3,672	1,438	6,823	7,893	9,839

- 그러나 2010회계연도의 대규모 결손은 2011회계연도 세입에 그대로 반영되어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
  - 즉,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3,129억원이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에 부(-)로 이전되어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1조 2,018억원이나 실제수납액은 8,131억원에 그치게 되어 당초 계획한 세입예산에 크게 부족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지난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결손은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재정변화에 서울시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그 만큼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을 연속되는 재정운영의 흐름에서 단년도의 단순 세입부족에 따른 결과로 분석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재정의 운영은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지균형을 맞추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의 2011회계연도 세외수입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이 바로 다음 회계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는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를 시 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1〉 최종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일반회계)(2011~2006)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최종예산 (A)	14,631,361	15,614,118	17,045,196	14,489,716	12,879,837	10,668,181
전년도이월액 (B)	349,269	288,283	420,427	325,325	265,522	278,381
예산현액 (C)=(A)+(B)	14,980,631	15,902,401	17,465,623	14,815,041	13,145,359	10,946,562
세입결산액(수납액) (D)	14,693,158	14,634,416	16,359,345	14,792,751	13,798,309	12,108,033
세출결산액(지출액) (E)	14,502,962	14,589,232	16,260,091	13,913,465	12,302,690	10,387,946
잉여금(차인잔액) (F)=(D)-(E)	190,196	45,184	99,254	879,287	1,495,619	1,720,087
기존채무상환	0	0	0	0	0	0
명시이월비	21,154	4,017	0	0	0	0
사고이월비	53,649	345,252	288,283	394,556	325,325	265,522
계속비	0	0	0	0	0	0
보조금집행잔액	12,633	8,825	25,448	41,586	32,717	9,610
순세계잉여금	102,759	△312,911	△214,476	443,145	1,137,577	1,444,955

### 〈표 3-52〉 서울시 각 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2011~1991)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채무상환	각종이월비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1991	6,301,342	4,968,000	1,333,342	-	676,555	1,933	654,854
1992	6,749,000	5,865,648	883,352	-	560,385	2,416	320,551
1993	6,905,784	6,045,031	860,753	-	652,535	1,169	207,049
1994	8,132,260	6,578,828	1,553,432	-	1,076,118	3,754	473,560
1995	9,269,740	7,290,896	1,978,844	-	868,412	3,870	1,106,562
1996	10,093,968	8,081,161	2,012,807	60,000	845,456	2,998	1,104,353
1997	10,066,793	8,729,675	1,337,118	-	991,651	3,518	341,949
1998	9,005,425	8,215,993	789,433	-	683,256	10,582	95,594
1999	10,128,752	9,019,220	1,109,532	-	518,625	4,926	585,981
2000	11,008,259	10,045,737	962,522	-	639,704	10,913	311,905
2001	12,515,593	10,841,039	1,674,555	-	815,800	10,516	848,239
2002	15,600,699	12,099,944	3,500,755	546,451	780,624	17,270	2,156,410
2003	16,845,100	13,618,643	3,226,457	333,067	912,931	6,889	1,973,569
2004	16,782,317	15,090,292	1,692,025	-	642,269	9,895	1,039,860
2005	17,184,268	15,850,996	1,333,271	-	562,087	12,381	758,803
2006	18,194,659	15,189,012	3,005,647	-	565,444	11,313	2,428,889
2007	20,694,677	17,859,275	2,835,402	-	866,773	41,698	1,926,931
2008	21,790,937	19,432,292	2,358,645	-	1,184,967	48,240	1,125,438
2009	23,683,001	22,767,443	915,558	20,000	929,491	36,670	△70,603
2010	20,925,637	19,978,233	947,404	-	883,237	9,849	54,318
2011	21,553,270	20,499,280	1,053,990	-	413,888	12,849	627,253

(8) 지방채 관련

〈표 3-53〉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발생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액	
계		3,783,146	-	630,855	△630,855	3,152,291
일반회계		1,214,350	-	532,450	△532,450	681,900
특별회계	소계	2,568,796	-	98,405	△98,405	2,470,391
	기타특별회계	2,254,703	-	95,705	△95,705	2,158,998
	공기업특별회계	314,093	-	2,700	△2,700	311,393

※ 채무부담행위, 발생주의상 부채 제외

- 2011년도 지방채 현재액은 3조 1,522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조 7,831억 4,600만원보다 6,308억 5,500만원(16.7%) 감소한 바
  - 일반회계는 전년도 1조 2,143억 5,000만원보다 5,324억 5,000만원(43.8%)감소된 6,819억원으로 이는 2011년도 서울시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감소시킨 것임
  - 특별회계<sup>58)</sup>는 전년도보다 984억 500만원이 감소된 2조 4,703억 9,1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57억 500만원(4.2%)이 감소한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794억 3,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61억 4,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101억 2,300만원)에서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보다 27억원이 감소한 것임

58) 지방채와 관련된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임

- 서울시의 2011년도말 지방채는 3조 1,522억 9,1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sup>59)</sup> 2011회계연도(일반회계)에는 5,55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된 이른바 3.22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정부가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보전해 주기로 하여 지난 회계연도 제1회 추경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족분 5,559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임<sup>60)</sup>
  
- 그러나 지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중 “**향후 5년간 지방채증권 상환계획**”에는 2011회계연도에 지방채증권을 1,494억원 상환할 계획으로 기재하였으나 2011회계연도에 실제 상환된 지방채증권은 도시철도공채(기타특별회계) 794억 3,300만원이 상환된 바
  - 지방세의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매출공채인 도시철도공채는 상환일정이 미리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목표한 지방채상환 일정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변화에 보다 주목하고, 지방채 상환일정을 재점검하여 불필요하게 상환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59) 10년 3조 7,831억원, '09년 3조 2,453억원, '08년 1조 8,563억원, '07년 1조 3,631억, '06년 1조 1,462억원임

60) 취득세 감소분 5,054억원, 지방교육세 감소분 505억원

- 다만, 복지부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출예산 편성시 증액편성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고, 세입여건 또한 부동산 경기둔화 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수정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세입전망 및 세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채상환일정을 최대한 준수토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1회계연도의 경우와 같이 지방채 상환에 초점이 맞추고,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통한 편익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자치단체의 채무가 증가되는 주원인을 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SOC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 증가 ② 서울시의 과도한 경쟁적 개발사업의 추진과 과시성·낭비성 지출의 증가 ③ 지방세 수입의 감소 ④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유로위기 등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대비할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치밀한 집행으로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5 예비비 관련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의 경우 예산액 3,708억 5,500만원 중 1,457억4,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209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7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 3-54〉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0	전년대비 증 감 액
예 산 액	370,855	180,579	190,276
지출결정액	145,748	123,163	22,585
지 출 액	120,924	111,123	9,801
지 출 건 수	56	68	△12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외

〈표 3-55〉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실국	지출결정액(가)		집행액 (나) = (다) + (라)			집행잔액(마) = (가) - (나)	건수
			계	지출액(다)	이월액(라)		
소 계	145,748	(100.0)	128,225	120,924	7,301	17,523	56
행정국	53,838	(36.9)	40,791	40,791	-	13,047	11
도시안전실	31,759	(21.8)	31,330	26,224	5,106	429	18
한강사업본부	23,171	(15.9)	22,934	21,797	1,137	237	3
소방재난본부	20,912	(14.3)	20,180	20,180	-	732	3
공원녹지국	4,962	(3.4)	4,876	4,306	570	86	3
교육협력국	4,514	(3.1)	1,849	1,849	-	2,665	1
도시교통본부	2,055	(1.4)	2,055	2,055	-	-	4
주택정책실	1,494	(1.0)	1,493	1,493	-	1	2
복지건강실	1,446	(1.0)	1,441	1,396	45	5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609	(0.4)	518	75	442	91	1
기후환경본부	590	(0.4)	360	360	-	230	2
재무국	400	(0.3)	400	400	-	-	1

※ 수도사업특별회계 6건 / 4,323백만원 제외



## ○ 예비비의 편성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예비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 서울시는 2011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당초 1,26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차 추경을 통하여 1,514억 3,5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 예비비 집행의 내재적 한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사업추진의 내실화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편의적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분명한 지출한계를 인식하여야 할 것인바

〈표 3-56〉 예비비의 지출제한

① 내재적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li> <li>-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li> <li>-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li> </ul>
② 실정법적 제약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li> </ul>

※ (자료)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86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중 **서해뱃길사업**(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와 **교육경비지원(조례상전출금)중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에 예비비가 집행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예비비의 지출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예비비 집행사례라 판단됨
  
- **서해뱃길사업**(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예비비 181억 8,100만원 집행)의 경우, 2011년도 예산심사시 서해뱃길 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관련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 더 이상의 예산투입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합법적인 예산확보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예비비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재개한 것인바
  - 동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예비비의 내재적 지출제한 즉,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한 사례로 판단됨
  
- 또한 **교육경비지원(조례상전출금)중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 사업의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예비비(18억 4,900만원)를 집행한 바
  - 동 예비비 집행사례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5~6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 2011년도 예산심사당시 시의회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을 위한 695억 1,300만원의 소요예산을 이미 반영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이를 “불법증액”으로 별도 표기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관련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발생시켰음

- 더욱이 저소득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이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조정되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서울시가 예비비 지출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1심판결('11.11.17)에서 패소함에 따라 퇴직공무원에 대한 배상금 200억원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 국회와 서울시가 상호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대방 토지에 대하여 상호 변상금을 납부하여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국회 소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예비비에서 104억 9,100만원 사용하였음<sup>61)</sup>

○ 그밖에도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286억 5,500만원을 지출결정<sup>62)</sup>하여 211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라고는 하나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이미 소요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시의회의 예산심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2011년도에 발생한 예비비 집행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예비비 지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예비비의 지출결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와 기

61) 국회는 서울시소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184억원을 납부하였음

62)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1,227억원을 편성하였음

준을 마련하고,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의회는 자의적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비비가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3-57〉 수해복구 관련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

실국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소 계		28,655	21,141	6,463	1,051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수해피해 복구	4,971	4,408	345	218
주택정책실	침수피해주택 긴급안전점검	61	60	-	1
소방재난본부	수해 응급복구 관련 소방장비 유지관리	912	912	-	-
복지건강실	삼육재활센터 수해복구	1,034	1,034	-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수해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609	75	442	91
도시안전실	아스팔트포장 긴급 보수	8,000	8,000	-	-
도시안전실	도로사면(절개지) 응급복구	5,000	4,250	750	-
도시안전실	양수기 구입	1,540	1,398	-	142
도시안전실	양재대로~구룡터널 간 도로사면 복구	650	109	457	83
도시안전실	국사봉터널 사면 보수	779	28	658	93
도시안전실	관악산저류조 설치	3,350	-	3,241	109
기후환경본부	수해폐기물 반입처리 비용	520	290	-	230
기후환경본부	잠수교 침수복구 처리비용	70	70	-	-
공원녹지국	낙석·산사태 방재시스템 구축	1,000	380	570	50
공원녹지국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용역	160	126	-	34

〈표 3-58〉 주요 예비비 지출 현황 (지출결정액 8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지출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소관 실·국
선거관리	35,583	25,842	9,741	2011 하반기 재보궐선거 관리경비	행정국
주민투표관리경비	18,255	14,949	3,306	주민투표 관리경비(선거관리위원회 주민투표경비 부담금 포함)	행정국
서해벚길사업	18,200	18,181	19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예비비 사용	한강사업본부
인력운영비	14,000	14,000	0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	소방재난본부
국회 변상금 납부	10,492	10,492	0	국회 변상금 납부	도시안전실
포장도로 유지보수	8,000	8,000	0	아스팔트포장 긴급 보수	도시안전실
직원복지 증진	6,000	5,268	73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확보	소방재난본부
한강 수해피해 복구	4,971	4,753	218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공원 응급복구	한강사업본부
교육경비지원 (조례상 전출금)	4,514	1,849	2,665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5~6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	교육협력국
초안산근린공원(도봉)조성	3,802	3,800	2	초안산근린공원 손실보상금증액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및 이자	공원녹지국
관악산저류조 설치	3,350	3,241	109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예비비 사용 (관악산 저류조 설치)	도시안전실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	2,439	2,439	0	도로사면(절개지) 수해응급복구	도시안전실
도로시설물(자치구 위탁관리) 보수 보강	2,033	2,033	0	도로사면(절개지) 수해응급복구	도시안전실
풍수해 피해복구	1,540	1,398	142	수해 복구(양수기 구매)	도시안전실
관악 은천길 도로확장	1,531	1,529	2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도시안전실
시민아파트 정리	1,433	1,433	0	보상합의(13세대)에 따른 건물보상금	주택정책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1,396	1,396	0	공영주차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도시교통본부
낙석 산사태 방재시스템 구축	1,000	950	50	우면산 산사태 관련 낙석 산사태 방재 시스템 구축	공원녹지국
소방차량 유지관리	912	912	0	수해 응급복구 관련 소방장비 유지관리비	소방재난본부

## 6 기금 운용 관련

- 2011회계연도의 경우, 9개 세부계정을 포함하여 총 1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말 13개 기금<sup>63)</sup>의 현재액은 6,258억 6,400만원으로 2010년도말의 5,672억 7,400만원과 비교하여 585억 8,900만원(10.3%)이 증가하였음

〈표 3-59〉 기금 현재액 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0	2009
기 금 수	13	15	15
연 도 말 현 재 액	625,864	567,274	627,387

(자료) 예산담당관-5481호(2012.6.8.)

- 13개 기금의 총수입규모는 3조 5,510억원으로 전년대비 △6,463억원 감소하였음
  - 내부거래 수입인 예수금 수입은 1,004억원 증가(재정투융자기금 781억원, 재해구호기금 재난계정 212억원 증가)하였으며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수입이 △2,209억원 감소(재정투융자기금 △1,05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41억원 감소 등)하였으며, 예탁금상환금 수입은 △4,946억원 감소(재정투융자기금 △4,899억원 감소, 재해구호기금 재난계정 △152억원 감소 등)하였음
- 총지출규모는 2조 9,251억원으로 전년대비 △7,049억원 감소하였음
  - 고유목적사업비는 770억원 증가(재난관리기금 360억원, 중소기업육

63) 서울시의 기금은 2002년 18개에 이르렀으나, 정책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기금을 설치 및 폐지 한 바 있어, 2007년 기후변화기금과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이 신설되고 2010년 신청사건립기금과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이 폐지되어 2011회계연도는 13개 기금이 운용되었음

성기금 84억원 증가 등)하였으나, 용자금 지출은 △7,757억원 감소 (재정투용자기금 △7,42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83억원 감소) 하였으며

- 내부거래 지출인 예탁금은 5,791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1,036억원 각각 증가하였음

〈표 3-60〉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주요항목	2011	2010	증 감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38,939	45,399	△6,460
	예치금잔액	5,673	5,900	△227
	예탁금잔액	33,266	39,499	△6,232
운용수입	합계	35,510	41,973	△6,463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26,121	27,411	△1,290
	출연금	8,326	8,574	△248
	보조금	221	5	216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10,815	13,024	△2,209
	예수금	4,734	3,730	1,004
	이자수입	1,581	1,492	90
	기타수입	444	586	△142
	예탁금상환금	3,716	8,662	△4,946
	예치금회수(사고이월포함)	5,673	5,900	△227
운용지출	합계	29,251	36,300	△7,049
당해 연도 사용 Ⓒ	소 계	21,031	33,871	△12,840
	고유목적사업비	3,832	3,063	770
	용자금	1,967	9,724	△7,757
	기본경비	10	13	△3
	차입금원리금상환	6,115	5,079	1,036
	예수금원리금상환	8,998	14,890	△5,892
	기타지출	109	1,102	△993
	예탁금	8,220	2,429	5,791
당해연도 현재액 Ⓐ+Ⓑ-Ⓒ	조성현재액	44,029	38,939	5,090
	예치금(사고이월포함)	6,259	5,673	586
	예탁금	37,770	33,266	4,504

(자료) 예산담당관-5481호(2012.6.8.)

### 〈표 3-61〉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증감액	주요 원인
합 계	625,864	567,274	58,590	
재정투융자기금	177,469	209,555	△32,086	예탁금 등 지출요인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	118,847	87,408	31,439	예수원리금상환등 지출요인 감소
식품진흥기금	10,899	7,914	2,985	사업비, 융자금 등 지출요인 감소
기후변화기금	41,834	36,096	5,738	출연금, 예치금회수 수입요인 증가
도로굴착복구기금	16,508	15,656	852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전체 수입 지출요인 감소하에 상대적 지출 감소
여성발전기금	1,069	995	74	공모사업비 등 지출요인 소폭 감소
지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8,532	6,767	1,765	예치금회수 수입요인 증가
사회복지기금	14,642	11,745	2,897	융자금 등 사업비 지출요인 감소
체육진흥기금	1,320	4	1,316	'11년부터 사업추진을 실시하기 위한 기존 재투예탁금상환으로 수입증가
감채기금	24,200	25,026	△826	차입금원리금상환 지출 요인 증가
재난관리기금	202,112	162,936	39,176	수해복구를 위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발생액 증가
남북교류협력기금	6,203	2,158	4,045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등 지출요인 감소
대외협력기금	2,229	1,014	1,215	대내외 협력사업비 지출요인 감소

※ 현재액은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연말 예치금(사고이월포함) 잔액임  
(자료) 예산담당관-5481호(2012.6.8.)



- 13개 기금에서 각 기금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적 성격의 지출을 의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용자사업은 모두 124개 사업(고유목적사업 117개, 용자사업 7개)에 지출계획현액이 8,12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식품안전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는 20개 사업, 29억 8,400만원에 불과하나 식품진흥기금에서는 37개 고유목적사업과 용자사업에 169억 5,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행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형성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연례 반복적인 행사·홍보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곤란성을 회피하고 편의적으로 기금으로 대거 사업을 편성해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률이 2.69%이나 기금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불용률은 18.3%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 용자사업의 경우에도 불용률이 11.5%에 이르고 있음
- 기금이 해당 목적사업 등에 한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임에도 기금사업의 예산집행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예산사업과 달리 불용액이 다시 기금으로 회전되어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도 면밀한 재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기금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용결과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기금에 대한 의회의 예산감시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표 3-62〉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총계〉	124개	812,069	579,899	98,667	133,503	16.4
<b>고유목적사업</b>	<b>117개</b>	<b>589,869</b>	<b>383,215</b>	<b>98,667</b>	<b>107,987</b>	<b>18.3</b>
중소기업육성기금	2	49,043	44,926	-	4,116	8.4
식품진흥기금	37	11,458	9,626	-	1,832	16.0
기후변화기금	13	8,512	5,551	-	2,960	34.8
도로굴착복구기금	2	12,750	11,934	-	816	6.4
여성발전기금	1	980	906	-	74	7.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0	21,187	17,782	-	3,404	16.1
노인복지계정	12	786	723	-	63	8.0
장애인복지계정	1	600	538	-	62	10.4
청소년복지계정	2	10,710	10,629	-	81	0.8
자활지원계정	1	1,305	1,240	-	65	5.0
주거지원계정	2	5,235	3,184	-	2,051	39.2
체육진흥기금	7	2,040	1,947	-	93	4.6
감채기금	1	64,502	64,190	-	312	0.5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5	367,725	183,303	98,667	85,755	23.3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	23,060	22,791	-	269	1.2
남북교류협력기금	1	4,300	-	-	4,300	100.0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9	3,552	2,582	-	970	27.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9	2,125	1,361	-	763	35.9
<b>융자사업</b>	<b>7개</b>	<b>222,200</b>	<b>196,684</b>	<b>-</b>	<b>25,516</b>	<b>11.5</b>
중소기업육성기금	1	200,000	185,200	-	14,800	7.4
식품진흥기금	1	5,500	3,007	-	2,494	45.3
기후변화기금	2	11,800	4,661	-	7,139	60.5
장애인복지계정	1	2,100	1,162	-	938	44.7
자활지원계정	1	800	655	-	145	18.2
주거지원계정	1	2,000	2,000	-	-	0.0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반 예산사업과의 차별성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불필요하게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규모와 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임

〈표 3-63〉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총계〉	812,069	579,899	98,667	133,503	16.4
고유목적사업 117개 사업	589,869	383,215	98,667	107,987	18.3
<b>중소기업육성기금</b>	<b>49,043</b>	<b>44,926</b>	<b>-</b>	<b>4,116</b>	<b>8.4</b>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48,885	44,801	-	4,084	8.3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57	125	-	32	20.5
<b>식품진흥기금</b>	<b>11,458</b>	<b>9,626</b>	<b>-</b>	<b>1,832</b>	<b>16.0</b>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89	60	-	29	32.5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1,149	1,094	-	54	4.7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33	20	-	13	40.1
1830손씻기 운동 전개	410	359	-	51	12.6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92	72	-	20	21.3
식품안전 지도·점검사업	375	349	-	26	7.0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250	236	-	14	5.6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170	137	-	33	19.2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500	494	-	6	1.2
자치구 위생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20	19	-	2	7.5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운영	50	30	-	20	40.0
한식 봄 조성을 위한 축제 등 지원	700	220	-	480	68.6
서울 국제빵·과자 페스티벌지원(신규)	100	100	-	-	0.0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	5	4	-	1	13.1
안심하고드세요 프로젝트홍보	170	134	-	36	21.2
서울식품안전뉴스 웹진 발간	85	84	-	1	1.4
식품안전위해요소 관리사업	25	20	-	5	18.8
식품안전협의체 구성운영	15	4	-	11	76.3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인증운영	450	241	-	209	46.5
민관합동 부정불량식품 감시	74	41	-	33	44.6
HACCP의무대상업소 기술지도사업	43	43	-	-	0.0
식품안전 멘토링(Mentoring) 실시	66	66	-	-	0.0
식품안전 전문교육실시	49	46	-	2	4.8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1,176	1,176	-	0	0.0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지원	45	45	-	0	0.5
안심서울! 튼튼이야기 버스사업 운영	450	450	-	0	0.0
식품안전 사각지대 발굴개선 공모 및 T/F팀 운영	82	55	-	27	33.2
식품안전서포터즈 운영	950	861	-	89	9.4
TV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식품의 모니터링	20	19	-	1	3.0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	25	25	-	-	0.0
소규모음식점 원산지관리 매뉴얼제작(신규)	60	56	-	4	6.2
원산지표시제 홍보	30	27	-	3	10.4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화학 조미료사용 감소사업	40	39	-	1	2.5
Hi Seoul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460	459	-	1	0.1
나트륨섭취감소사업(Salt Down)	130	130	-	-	0.0
채소 과일 섭취늘리기 사업	70	70	-	-	0.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자치단체 이전)	3,000	2,342	-	658	21.9
<b>기후변화기금</b>	<b>8,512</b>	<b>5,551</b>	<b>-</b>	<b>2,960</b>	<b>34.8</b>
도시가스사업용자지원	1,000	-	-	1,000	100.0
민간 그린홈 보급 지원사업	1,635	888	-	747	45.7
친환경 전기이륜차 민간부문 확대보급 사업	388	385	-	3	0.6
녹색성장지원센터 운영	300	243	-	57	18.8
가정음식점 발생 폐유 수거차량 구매	220	220	-	-	0.0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200	101	-	99	49.4
녹색시범아파트 선정 지원	800	478	-	322	40.2
전기택시 시범보급	700	-	-	700	100.0
녹색캠퍼스 선정 지원	90	90	-	-	0.0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고도화	150	132	-	18	12.1
전경버스 전기공급시설 설치	77	62	-	15	20.0
분진흡입 청소차 도입	1,892	1,892	-	-	0.0
소규모 물청소 장비확보 지원	1,060	1,060	-	-	0.0
<b>도로굴착복구기금</b>	<b>12,750</b>	<b>11,934</b>	<b>-</b>	<b>816</b>	<b>6.4</b>
도로굴착복구공사	12,620	11,826	-	794	6.3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30	108	-	22	17.1
<b>여성발전기금</b>	<b>980</b>	<b>906</b>	<b>-</b>	<b>74</b>	<b>7.6</b>
공모사업 추진	980	906	-	74	7.6
<b>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b>	<b>21,187</b>	<b>17,782</b>	<b>-</b>	<b>3,404</b>	<b>16.1</b>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3,407	2,853	-	554	16.3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1,646	1,366	-	280	17.0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4,107	3,198	-	909	22.1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39	68	-	71	50.9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59	149	-	11	6.7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03	63	-	40	38.9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31	50	-	81	61.8
노원자원회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4,429	3,753	-	676	15.3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7,000	6,218	-	782	11.2
노원주민 편익시설 이용료	66	65	-	1	1.4
<b>노인복지계정</b>	<b>786</b>	<b>723</b>	<b>-</b>	<b>63</b>	<b>8.0</b>
노인 건강증진사업	114	114	-	-	0.0
노인 정보화 교육	20	20	-	-	0.0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25	25	-	0	1.7
노인생애체험센터 운영	30	30	-	-	0.0
어르신 자원봉사	95	81	-	14	14.7
경로효친 행사지원	45	45	-	-	0.0
노인관련 학술대회 지원	30	28	-	2	5.2
노인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53	52	-	1	1.6
노인 지도자육성	63	63	-	-	0.0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80	80	-	-	0.0
어르신 주거지원	201	155	-	46	22.9
위치 확인서비스	30	30	-	0	0.3
<b>장애인복지계정</b>	<b>600</b>	<b>538</b>	<b>-</b>	<b>62</b>	<b>10.4</b>
장애인단체공모사업지원	600	538	-	62	10.4
<b>청소년복지계정</b>	<b>10,710</b>	<b>10,629</b>	<b>-</b>	<b>81</b>	<b>0.8</b>
어려운 청소년 수업료 등 지원	710	629	-	81	11.4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10,000	10,000	-	-	0.0
<b>자활지원계정</b>	<b>1,305</b>	<b>1,240</b>	<b>-</b>	<b>65</b>	<b>5.0</b>
자활사업 운영 지원	1,305	1,240	-	65	5.0
<b>주거지원계정</b>	<b>5,235</b>	<b>3,184</b>	<b>-</b>	<b>2,051</b>	<b>39.2</b>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4,935	3,077	-	1,858	37.6
저소득시민 주거안정 공모사업추진	300	107	-	193	64.4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b>체육진흥기금</b>	<b>2,040</b>	<b>1,947</b>	<b>-</b>	<b>93</b>	<b>4.6</b>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1,100	1,100	-	-	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280	275	-	5	1.6
201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추진	50	-	-	50	10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80	80	-	-	0.0
장애인 체육용품 임대사업	150	150	-	-	0.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50	26	-	24	48.0
체육분야 공모사업	330	315	-	15	4.5
<b>감채기금</b>	<b>64,502</b>	<b>64,190</b>	<b>-</b>	<b>312</b>	<b>0.5</b>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건설부채상환	64,502	64,190	-	312	0.5
<b>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b>	<b>367,725</b>	<b>183,303</b>	<b>98,667</b>	<b>85,755</b>	<b>23.3</b>
재난예방	232,414	119,698	49,015	63,700	27.4
응급복구	100,117	50,154	41,801	8,162	8.1
연구용역	3,479	1,655	275	1,549	44.5
풍수해 피해복구	11,052	-	-	11,052	100.0
긴급 노후관로 개량	20,664	11,796	7,576	1,292	6.2
<b>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b>	<b>23,060</b>	<b>22,791</b>	<b>-</b>	<b>269</b>	<b>1.2</b>
이재민 재해보상	22,360	22,134	-	226	1.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700	657	-	43	6.1
<b>남북교류협력기금</b>	<b>4,300</b>	<b>-</b>	<b>-</b>	<b>4,300</b>	<b>100.0</b>
민간단체 등 지원	4,300	-	-	4,300	100.0
<b>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b>	<b>3,552</b>	<b>2,582</b>	<b>-</b>	<b>970</b>	<b>27.3</b>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940	1,300	-	640	33.0
타지방 전통문화 체험공간운영	65	64	-	1	2.0
태양광산업연구개발 교류협력	50	50	-	0	0.3
세종대왕 자태실 태 봉출의식 및 퍼레이드행사	100	99	-	1	1.4
타 시도 공무원 대상연수 프로그램운영	27	14	-	13	47.8
청소년 문화사업 교류	350	338	-	12	3.3
관광홍보 마케팅	50	46	-	4	8.1
농수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950	672	-	278	29.3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1사1촌 사업	20	-	-	20	100.0
<b>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b>	<b>2,125</b>	<b>1,361</b>	<b>-</b>	<b>763</b>	<b>35.9</b>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31	684	-	47	6.4
글로벌시티 네트워크 아카데미운영 (고위공무원 단기연수)	400	277	-	123	30.9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92	53	-	39	42.1
개발도상국 청소년센터 교육지원	92	75	-	17	18.0
외국 지방정부 교류 지원	20	8	-	12	61.3
몽골울란바토르시"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지원	30	26	-	4	13.4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 부녀자의 고국방문 지원	200	182	-	18	9.2
몽골울란바토르시 보건의료지원	60	57	-	3	5.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	-	-	500	100.0
<b>융자사업 7개</b>	<b>222,200</b>	<b>196,684</b>	<b>-</b>	<b>25,516</b>	<b>11.5</b>
<b>중소기업육성기금</b>	<b>200,000</b>	<b>185,200</b>	<b>-</b>	<b>14,800</b>	<b>7.4</b>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185,200	-	14,800	7.4
<b>식품진흥기금</b>	<b>5,500</b>	<b>3,007</b>	<b>-</b>	<b>2,494</b>	<b>45.3</b>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5,500	3,007	-	2,494	45.3
<b>기후변화기금</b>	<b>11,800</b>	<b>4,661</b>	<b>-</b>	<b>7,139</b>	<b>60.5</b>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	10,800	4,211	-	6,589	61.0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00	450	-	550	55.0
<b>장애인복지계정</b>	<b>2,100</b>	<b>1,162</b>	<b>-</b>	<b>938</b>	<b>44.7</b>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100	1,162	-	938	44.7
<b>자활지원계정</b>	<b>800</b>	<b>655</b>	<b>-</b>	<b>145</b>	<b>18.2</b>
저소득 시민융자 지원 사업	800	655	-	145	18.2
<b>주거지원계정</b>	<b>2,000</b>	<b>2,000</b>	<b>-</b>	<b>-</b>	<b>0.0</b>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2,000	2,000	-	-	0.0



**IV. 질의토론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승인**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VIII. 시정요구사항 : 별첨**

##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

연번	시정요구사항	내 용
1	<b>2011년도 예산서중 “불법증액” 표기 관련</b>	○2011년도 예산중 의회가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시민편의 증진, 중증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되 이를 “불법증액”으로 표기하였음.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불법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그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2	<b>양화대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책임규명</b>	○의회에서 삭감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그 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3	<b>은평병원 임상연구용역비에 대한 세입처리</b>	○은평병원이 민간계약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용역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수납하고, 필요시 세출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사항	내 용
4	<b>추경대상사업에 대한 재정관리 철저</b> <b>(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b>	<p>○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사업의 종료에 따라 국비의 감내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로 국비가 별도로 교부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감액 조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임. 향후 감액의 사유가 분명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추경등 철저한 재정관리를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재배분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p>
5	<b>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b>	<p>○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경우 세출예산의 과소편성으로 당해 연도에 버스업체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 부족분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채무부담행위 편성등 적법한 세출 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의 보조금 지급과 함께 합리적 재정운용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p>
6	<b>세빛등등섬 조성관련 불공정 협약 및 특혜성 행정지원등에 대한 조치 촉구</b>	<p>○세빛등등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성 행정지원등을 중단하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체결한 불공정협약에 대하여 시정할 것</p> <p>○또한 집행부가 진행중인 조사·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p>
7	<b>기금사업 운용상의 문제점</b>	<p>○기금의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재원부</p>

연번	시정요구사항	내 용
		<p>족으로 인하여 실제 은행협력자금으로 운용되고 있고, 소멸성 이차보전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더욱 침해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를 비롯한 기금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p> <p>○또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및 용자사업의 경우 그 불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집행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사업의 효과가 낮은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를 통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기금일몰제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p>
8	서울시 지방채 관련	<p>○서울시 지방채의 '11년도말 현재액은 3조 1,523억원에 이르고 있고 매년 대규모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p>
9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p>○서울시립대학교의 기성회비의 경우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여건 개선에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기성회계 설치의 목적에 부합될 것임. 또한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향후,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 할 것</p>

# 201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863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세입·세출 결산

####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14조 6,931억 5천8백만원
- 세출 결산액 14조 5,029억 6천2백만원
- 차인잔액 1,901억 9천6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536억 5천만원과 명시이월액 211억 5천4백만원 및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126억 3천3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7억 5천9백만원임.

(2)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5조 9,977억 5백만원
- 세출 결산액 5조 2,161억 7천4백만원
- 차 인 잔 액 7,815억 3천1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1,599억 5천7백만원과 명시이월액 1,321억 9천9백만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1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891억 5천9백만원임.

(3) 공기업회계(지역개발기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1회계연도말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현황은

가) 세입예산결산

- 수익적수입 6,133억 6천8백만원
- 자본적수입 1,320억 8천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및미수금 588억 7천4백만원
- 이월재원충당액 580억 7천9백만원
- 합 계 8,624억 7백만원임

나) 세출예산결산

- 수익적지출 4,458억 4천5백만원
- 자본적지출 2,808억 3천5백만원
- 이월예산지출 534억 6천4백만원
- 합 계 7,801억 4천4백만원임

다) 자금결산

- 전기이월액	1,016억 5백만원
- 수 입	7,608억 2백만원
- 지 출	7,801억 4천4백만원
◦ 이 월 액	822억 6천2백만원임

라) 자 산

2011회계연도 말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은 5조 5,392억 6천3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5조 4,526억 8천2백 만원에 비하여 865억 8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1,535억 1천5백만원
- 투 자 자 산	3,064억원
- 가동 설비 자산	4조 6,928억 6천2백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3,800억 7천2백만원
- 무 형 자 산	31억 9천7백만원
- 기타 비유동자산	32억 1천7백만원임

마) 부 채

2011회계연도 말 현재의 부채는 7,162억 1천4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6,727억 9천9백만원에 비하여 434억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동부채	798억 2천1백만원
- 고정부채	6,363억 9천3백만원임

바) 자 본

2011회계연도 말 현재의 자본총액은 4조 8,230억 5천 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4조 7,798억 8천3백만원에 비하여 431억 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결산 내용은

- 자 본 금 2,582억 8천 만원
- 자본잉여금 3조 5,809억 9천4백만원
- 이익잉여금 9,837억 7천6백만원임

사) 손 익

2011회계연도 말 당기순이익은 △3억 3천5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446억 6천9백만원에 비하여 △450억 4백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 수 익 6,433억 4천7백만원
- 비 용 6,436억 8천2백만원
- 당기순이익 △3억 3천5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2011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6,258억 6천4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말 5,672억 7천4백만원에 비하여 585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3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 재정투융자기금 1,774억 6천9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188억 4천7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108억 9천9백만원
- 기후변화기금 418억 3천3백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165억 8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10억 6천9백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85억 3천2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146억 4천2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3억 2천만원
- 감채기금	242억원
- 재난관리기금	2,021억 1천2백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62억 4백만원
- 대외협력기금	22억 2천9백만원임

#### 다. 채권현재액

2011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조 6,940억 8천 4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말 3조 5,424억 9천3백만원에 비하여 8,484억 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현재액은

- 일반회계	1,835억 2천만원
- 기타특별회계	1,875억 8천5백만원
- 공기업회계	1,442억 6천5백만원
- 기금	2조 1,787억 1천4백만원임

#### 라. 채무결산

2011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조 1,761억 2천2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말 3조 8,177억 1백만원에 비하여 6,415억 7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결산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	6,819억원
- 기타특별회계	2조 1,589억 9천8백만원
- 공기업회계	3,352억 2천4백만원임

## 마. 예비비 지출

###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3,838억 4천3백만원
- 지출 결정액 1,503억 1천5백만원
- 지 출 액 1,252억 4천7백만원
- 이 월 액 73억 1백만원
-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177억 6천7백만원이며
  - 그 사용내역은 풍수해 피해복구, 서해갯길 사업, 선거관리 등 45건임

### (2)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2,324억 8백만원
- 지출 결정액 126억 6천1백만원
- 지 출 액 124억 1천3백만원
- 이 월 액 2백만원
-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2억 4천6백만원이며
  - 그 사용내역은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관악 은천길 도로확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11건임

### (3)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29억 8천8백만원
- 지 출 결 정 액 45억 6천7백만원
- 지 출 액 43억 2천3백만원
- 지출결정액중 집행잔액은 2억4천4백만원이며
  - 그 사용내역은 수자원공사 소송미납금 등 6건임.

바. 재무회계 결산

(1) 2011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20조 3,127억 3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19조 3,526억 6백만원에 비하여 9,600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2조 8,156억 2천2백만원
- 투 자 자 산	14조 3,062억 3천4백만원
- 유 형 자 산	102조 9,678억 9천만원
- 기타 비유동자산	2,229억 5천7백만원임

(2) 2011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4조 5,093억 3천 8백만원으로 2010 회계연도 말 4조 9,794억 6천만원에 비하여 4,701억 2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부 채	1조 5,651억 1천6백만원
- 장기 차입 부채	2조 7,620억 6천1백만원
- 기타비유동부채	1,821억 6천1백만원임

(3) 2011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115조 8,033억 6천 5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114조 3,731억 4천 6백만원에 비하여 1조 4,302억 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고 정 순 자 산	99조 6,159억 8천8백만원
- 특 정 순 자 산	2조 9,873억 7천8백만원
- 일 반 순 자 산	13조 1,999억 9천9백만원임

(4) 2011회계연도 운영차액은 2조 303억 9천2백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8,782억 4천9백만원에 비하여 1조 1,521억  
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수	익	18조 4,345억 8천1백만원
- 비	용	16조 4,041억 8천9백만원
- 운	영 차 액	2조 303억 9천2백만원임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라. 지방재정법 제50조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마. 지방재정법 제52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바. 지방재정법 제53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 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자.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그 밖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① 검사위원은 시장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감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억원)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A)	세입·세출결산					다음년도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 (F)	순세계 잉여금 (G)=B-E-F	집행잔액	
		차입잔액 (B)=C-D	세입결산 (C)		세출결산 (D)		소계 (E)		명시	사고			(H) =A-D-E	잔액율 (%)
			결산율 (%)	결산율 (%)	결산율 (%)	이월율 (%)								
합계	218,832	10,540	215,533	98.5	204,993	93.7	4,139	1.9	1,534	2,605	128	6,273	9,700	4.4
일반회계	149,807	1,902	146,932	98.1	145,030	96.8	748	0.5	212	536	126	1,028	4,029	2.7
특별회계	69,025	8,638	68,601	99.4	59,963	86.9	3,391	4.9	1,322	2,069	2	5,245	5,671	8.2
기타	60,009	7,815	59,977	99.9	52,162	86.9	2,922	4.9	1,322	1,600	2	4,891	4,925	8.2
공기업	9,016	823	8,624	95.7	7,801	86.5	469	5.2	0	469	0	354	746	8.3

※ 연도별 세입결산율, 집행율, 이월율, 불용율, 순세계잉여금(예산현액대비)

- 세입결산율 : '07 : 105.4%, '08 : 99.8%, '09 : 93.5%, '10 : 92.9%, '11 : 98.5%

- 집행율 : '07 : 91.0%, '08 : 89.0%, '09 : 89.9%, '10 : 88.7%, '11 : 93.7%

- 이월율/불용율 : '07 : 4.4%/4.6% '08 : 5.4%/5.6%, '09 : 3.7%/6.5%, '10 : 3.9%/7.3%, '11 : 1.9%/4.4%

- 순세계잉여금 : '07 : 1조9,269억원, '08 : 1조1,254억원, '09 : △706억원, '10 : 543억원, '11 : 6,273억원

## ○ 채권현재액

(단위:백만원)

구분	2010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2011년도말 현재액
		계	증가	감소	
합계	3,542,493	△848,409	965,997	1,814,406	2,694,084
일반회계	184,239	△719	37,647	38,366	183,520
특별회계	392,724	△60,874	30,589	91,463	331,850
기금	2,965,530	△786,816	897,761	1,684,577	2,178,714

## ○ 채무결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0년도말	당해연도증·감			2011년도말
		계	증가	감소	
합계	3,817,701	△641,579	23,831	665,410	3,176,122
일반회계	1,217,350	△535,450	0	535,450	681,900
특별회계	2,600,351	△106,129	23,831	129,960	2,494,222